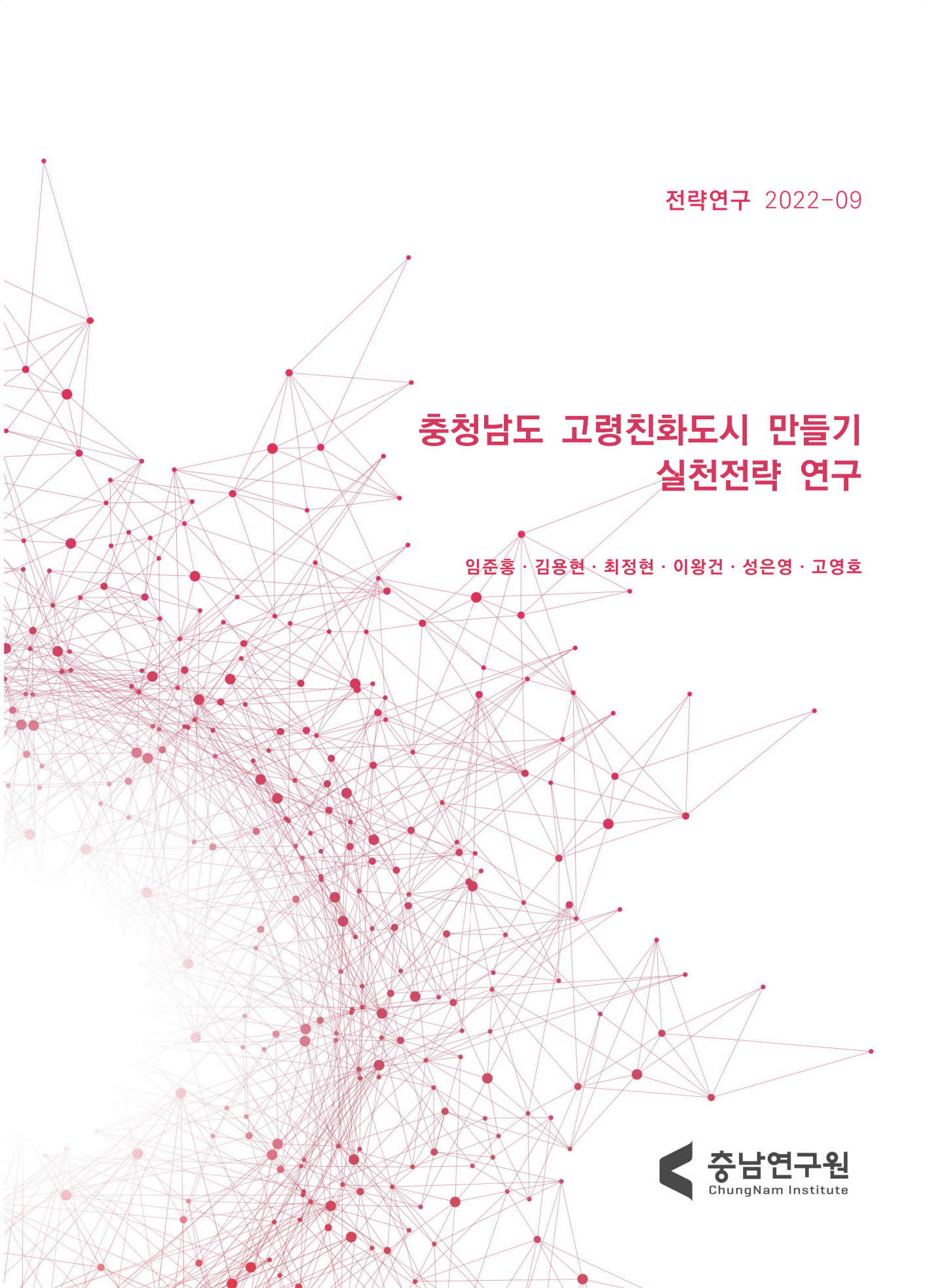




전략연구 2022-09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임준홍 · 김용현 · 최정현 · 이왕건 · 성은영 · 고영호

목 차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방법과 진행과정 3
- 3. 선행 연구 검토 6

제2장 고령친화 관련 현황 및 사례분석

- 1. 고령자 현황 및 환경분석 7
- 2. 고령친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17
- 3. 고령친화 시설·서비스 관련 정책과 사례분석 49
- 4. 시사점 62

제3장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 1. 접근방법 65
- 2.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과의 연계 66
- 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90
- 4. 충청남도 세대통합 맞춤형 도시 가이드라인(안) 99
- 5.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 108

제4장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 1. 기본방향 109
- 2. 접근방법 111
- 3.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 124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결론 130
- 2. 정책건의 132

참 고 자 료 133

표 목 차

〈표 1-1〉 연구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5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표 2-1〉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충남의 고령인구 현황	9
〈표 2-2〉 충남의 고령화 추이	9
〈표 2-3〉 충남의 시군별 고령인구 현황	10
〈표 2-4〉 충남의 독거노인 현황	10
〈표 2-5〉 충남 시군별 경로당 현황	12
〈표 2-6〉 충청남도 분야별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14
〈표 2-7〉 충청남도 분야별(소분류)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15
〈표 2-8〉 Aging in Community 개념의 구분과 관련 정책 지원 특성	19
〈표 2-9〉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방향과 세부내용	22
〈표 2-10〉 국내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련 현황	29
〈표 2-11〉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영역별 요인과 전략	33
〈표 2-12〉 미국 CCRC의 연속돌봄형 주거환경 제공	39
〈표 2-13〉 미국 주요 UBRC의 대학 참여 현황	40
〈표 2-14〉 WHO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령친화도시 영역	44
〈표 2-15〉 캐나다 고령친화도시의 추진 과정	44
〈표 2-16〉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47
〈표 2-17〉 생활SOC 관련 시설의 정의와 시설 분류	51
〈표 2-18〉 생활SOC 복합화의 형태	54
〈표 2-19〉 고령자 시설과 복합화하는 시설 유형	55
〈표 3-1〉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편 총칙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목적 등 명확화(안)	68
〈표 3-2〉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69
〈표 3-3〉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70
〈표 3-4〉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71
〈표 3-5〉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4절 인구수용계획’ 조정(안)	72
〈표 3-6〉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4절 인구수용계획’ 중 주택계획 조정(안)	73
〈표 3-7〉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6절 교통처리계획’ 조정(안)	76

〈표 3-8〉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1절 ‘기반시설계획’ 조정(안)	79
〈표 3-9〉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81
〈표 3-10〉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82
〈표 3-11〉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86
〈표 3-12〉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108
〈표 4-1〉 필요시설 도출 및 전략 설정 과정 사례	113
〈표 4-2〉 생활밀착형 특화플랫폼(예시)	114
〈표 4-3〉 공공임대주택-생활SOC복합화 시범사업 예시	116
〈표 4-4〉 기성시가지의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계획	119
〈표 4-5〉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계획 항목 및 내용 예시	119
〈표 4-6〉 생활SOC복합화사업 대상 부처별 국비 사업	12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기본적 틀	4
[그림 2-1] 고령자 현황 및 특성	8
[그림 2-2] 충남 고령자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11
[그림 2-3] 행정리별 고령화 실태 및 핫스팟 분석	12
[그림 2-4] 충청남도 분야별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14
[그림 2-5] 충청남도 분야별(소분류)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16
[그림 2-6]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지자체 현황	26
[그림 2-7] 고령친화도시의 구축 과정	26
[그림 2-8]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 과정	34
[그림 2-9] 미국 NORC 지정 현황	37
[그림 2-10] 미국 뉴욕 주 Forest Hills의 NORC 생활 모습	37
[그림 2-11] CCRC 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 대응의 다양한 주거옵션 제공	38
[그림 2-12]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 개념도	41
[그림 2-13] 영국 런던의 건강 뉴타운 조성계획	42
[그림 2-1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마을 추진전략과 목표	47
[그림 2-15] 2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마을 개념도	48
[그림 2-16] 생활SOC의 개념	50
[그림 2-17] 늑내건강학교 공간구성	57
[그림 2-18] 경로당-청년주택 복합화사업	58
[그림 2-19] 세대융합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	59
[그림 4-1] 공간복지 관련 시설 현황 분석	112
[그림 4-2] 복합시설 공급 유형 개념도	114
[그림 4-3] 생활SOC 복합화방안 제안 예시	115
[그림 4-4] 서울형 생활SOC 사업모델 예시	116
[그림 4-5] 적정 공급 입지 선택을 위한 자료와 분석 틀 예시	118
[그림 4-6] 종료된 생활SOC 관련 국비 사업	120
[그림 4-7] 시설의 재배치 및 재활용 개념	120
[그림 4-8] 지역단위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체계 개념도	121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자 체감형 삶의 질 제고 전략 필요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1년 16.5%에서 2060년에는 43.9%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2.93점이며,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 부상률은 113.6명으로 비교적 높다. 충남사회조사(2019) 결과 충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돌봄 서비스 확대,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주거시설 확대 순서이다.

□ 충남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및 전략 필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 제3조의 실천전략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분포, 선호 등과 연계한 고령친화 공간전략 및 정주환경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신도시개발(신시가지개발)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접목이 필요하다.

□ 충남 민선8기 주택 관련 공약과 연계한 실천전략 필요

특히 ‘충남형 리브투게더1)’ 공약 실행(2026년까지 공동주택 5000호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주택공급 전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법을 적용한다.

1) ‘리브투게더’는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브랜드명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85㎡)을 중심으로 공급 예정이며,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주택가격 상승률을 미반영한 원가 수준으로 분양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자 관련 통계와 선행연구, 관련 정책과 사례 분석, 최근 민선8기 정책 동향 등을 종합하여, 충남이 더 나은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연구의 도시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신개발지역(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기성시가지로 나누어 전략을 제안한다.

- 신개발지역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만들기 전략 및 지침 (가이드라인) 제안

신도시(신시가지)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개발 지침’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실행력 담보를 위해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발’과 ‘충남형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정책의 연계 방안을 고려한 업무지침을 제안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의 확장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세대융합 관점에서 ‘충청남도 세대통합 맞춤형 도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안한다.

- 기성시가지 : 고령친화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제시

국가정책과 연계한 고령자 중심의 생활SOC공급 전략을 제시한다. 충청남도나 개별 시군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실행을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과 진행과정

1) 연구 방법과 범위

연구자료 : 정책동향 + 선진사례 ⇒ 충남형 고령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 발굴

충남도 및 국가 고령자 통계 및 실태분석 자료: 고령자 현황 및 특성분석

연구방법 : '논의 및 소통'을 위한 연구 협의회 운영

⇒ 충청남도-충남개발공사-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실행 가능한 정책 개발

- 충남도정 핵심과제인 고령화 대책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고령친화도시 개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국가정책을 연계하여 고령자 중심의 융복합 시설 도입·공급방안을 제안함

민선8기 충남도 고령화 정책의 확대 및 재구조화(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화 관점)다.

- 정책 활용도 강화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연구목표 설정

초고령사회 등을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침 제안 및 신규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반영(도시재생사업지 포함)한다.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리브투게 더 주택용지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협력하여 지침 시범적용

실천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도출하여, '충청남도-충남개발공사·LH 등 개발주체-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주 송선지구, 계룡 하대실2지구에 시범 적용 후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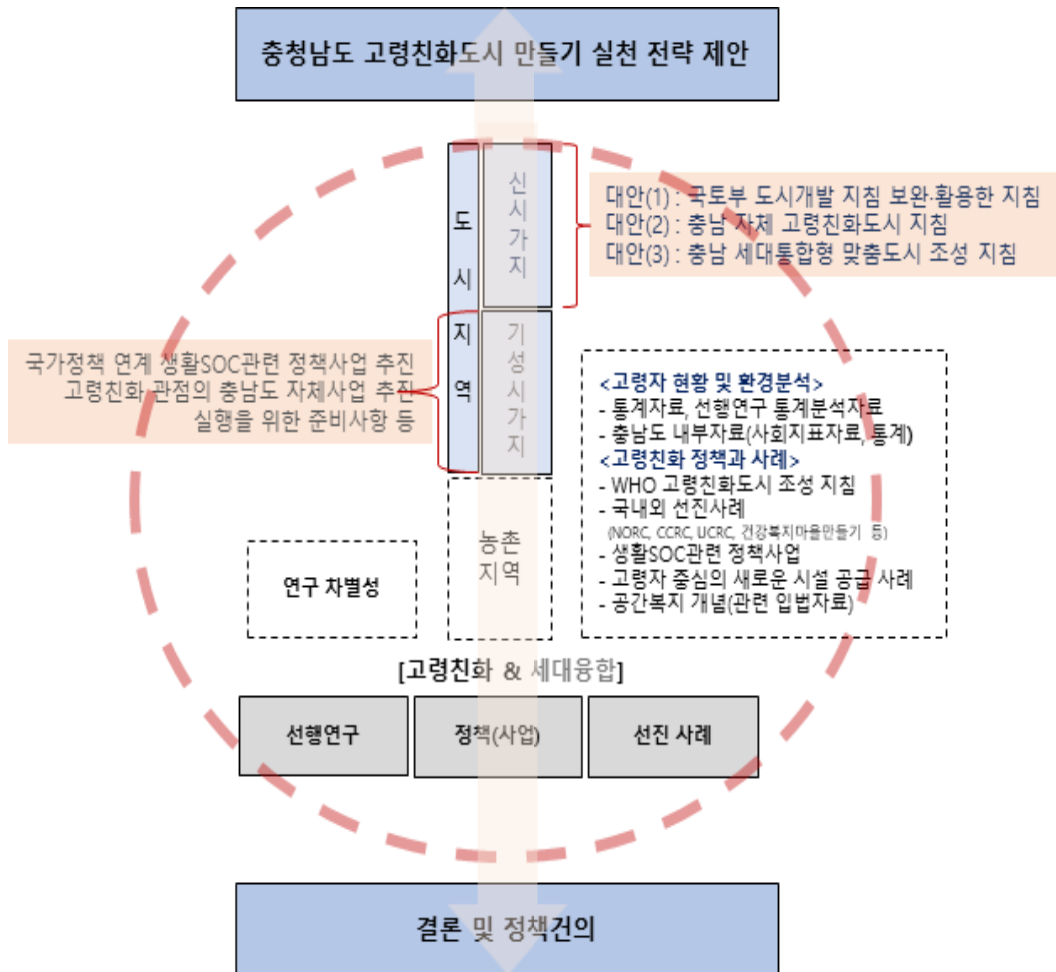
-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고령친화 전략은 제외함

농촌의 고령친화전략은 연구원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안한 사항으로 금회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 연구의 기본적 틀과 연구내용에 따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당초 연구제안 목적에 기초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과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민선8기 충청남도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도시공간에서의 고령친화 관점 실천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농촌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특성에 따라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로 개발하여 각각의 실천전략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기본적 틀

3) 주요 연구내용과 진행과정 *연구비 7,000,000원

□ 연구의 주요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표 1-1〉 연구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연구 주요내용	추진일정	2022년(연구기간: 8개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2.고령친화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 -고령자 현황 및 환경분석 -고령친화 관련 정책과 사례분석 -고령자 시설·서비스 관련 정책사례분석 -시사점									
3. 도시개발사업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 -국토부 도시개발지침 보완-활용 -충남도 자체 고령친화 도시조성 가이드라인 제안 -세대통합형 맞춤형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제안									
4.기성시가 지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국가정책 연계 생활SOC관련 정책사업 추진 -고령친화 관점의 자치사업 발굴·추진 -실천을 위한 준비									
5.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및 결론 -정책제언 및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착수연심회(●) - 워크숍 등(△) - 최종연심회(●)			●		△	△	△	△	●

3. 선행 연구 검토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구체적 실천전략 제안

[체계적·종합적 연구]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의 실행모델 제안 및 입법 중인 ‘공간복지 기본법’ 대응(정책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실행적·협력적 연구]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 충청남도-시군(공주시, 계룡시, 충남개발공사) 등 협력 연구를 수행한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정세미 외, 2021)	설문조사 및 분석, 계량분석(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등)	고령친화환경,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분석
	2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이동기 외, 2020)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제언
	3	충남형 고령친화마을 모델개발 방향(임형빈 외, 2020)	정책 및 사례 분석, 통계분석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마을 모델 제언
	4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김춘남, 2019)	현황분석, 관련 정책사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와 방향 도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조례 제언,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제언
	5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고영호 외, 2018)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 관련 기관 협동연구	외부공간·시설의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방법 제언,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활용방안 제언
	7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 서비스 격차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임준홍 외, 2021)	- 통계적 분석방법 : GIS접근성 분석, 회귀분석, 설문조사(충남사회지표조사 활용) 등 - 최소 분석공간단위 : 충남/시설별 위치정보	생활SOC 시설유형별 서비스 실태분석과 지역별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상호 관계 분석 및 취약지역 도출, 정책제언
	8	도심거주 고령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임준홍, 2015)	충남사회지표 원자료 분석을 통한 충남고령자 주거특성 분석	고령자 도심거주 만족도 분석 도심주거이동 의향 분석 고령자 도심거주 촉진방안 제언
	근거기반의 실행가능한 정책개발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의 실행모델 제언 *입법 중인 ‘공간복지 기본법’ 대응(정책사업 등)에 선제적 대응			
본 연구	공간복지 정책과 연계한 충남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행 전략 연구	- 통계적 분석방법 : 2021년 충남사회지표 원자료 + 국가통계 - 통합적 분석(회귀분석+GIS) 실행가능성 높은 도시개발지역 등 탐색적·전략적 분석	충남형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전략 마련(충남 도시개발 업무지침 마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한 실제 적용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적용	

제2장 고령친화 관련 현황 및 사례분석

1. 고령자 현황 및 환경분석

1) 우리나라 고령자 현황 및 생활환경

□ 통계청 자료(2021)²⁾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1년 16.5%, 2025년 20.3%, 2060년 43.9%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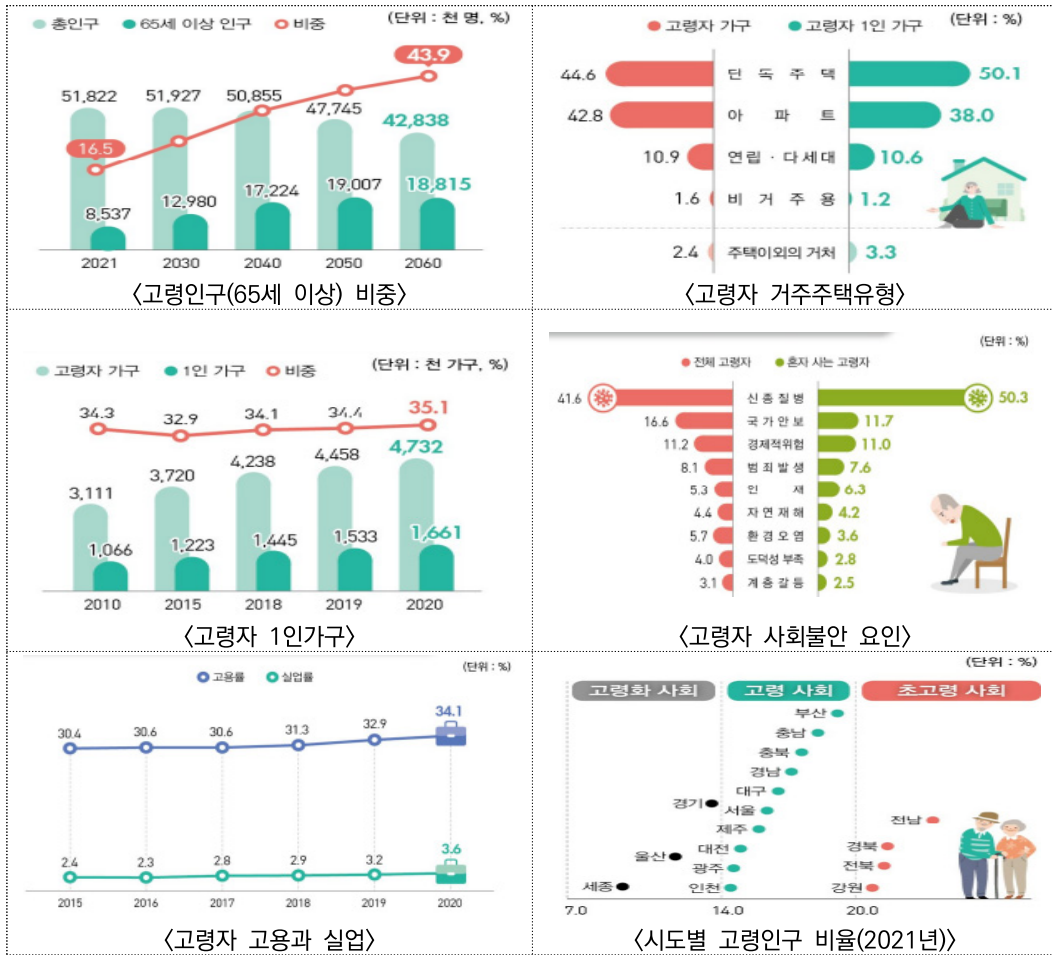
□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고령자 가구임

연령대별로는 70대 비중이 가장 높고(44.1%), 성별로는 여자가 높다(71.9%). 1인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7년에는 현재(2021)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20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고령자 대비 1인 고령자가 건강관리 실천율,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임

2020년 1인 고령자의 17.1%만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전체 고령자(24.3%)에 비해 주관적 건강평가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1인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 검진 79.3%, 적정 수면 74.2% 순이고, 전체 고령자보다 5%이상 낮다. 2020년 1인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식도는 각각 38.5%, 35.5%로 전체 고령자보다 4% 이상 낮게 조사되었다.

2)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2021.9.29.) 참조 재정리.



자료 : 통계청 고령자 통계(2021)

[그림 2-1] 고령자 현황 및 특성

□ 전체 고령자 대비 1인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10월 1인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여 명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인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이다. 2019년 1인 고령자 3명 중 1명(33.0%)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전체 고령자는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충남의 고령자 현황

- 충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19.3%로 전국평균 16.5%보다는 높지만 타 광역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충남의 고령인구 현황

(2021. 02기준,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6.3%	19.6	16.8	14.2	14.3	14.6	12.8	9.9	13.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9%	18.2	19.3	21.6	23.7	21.9	17.6	15.9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 충남의 고령화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34.5%로 추계하고 있음

〈표 2-2〉 충남의 고령화 추이

(2021.02기준)

구분		2006	2017	2019	2021	2024	2029	2035	2040
충남	천명	273	351	374	410	469	590	727	839
	%	14.1	16.3	17.1	18.4	20.6	25.1	30.2	34.5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 충남 시군별 고령인구 비중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시급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촌적 성격이 강한 군급도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급도시에서는 천안과 아산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낮은 반면 논산, 공주, 보령 등은 상대적으로 높다. 군급지역에서는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은 24.3%로 낮지만 다른 군급지역은 이미 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충남의 시군별 고령인구 현황

(2021.02기준)

구 분	전체인구	합계	
		명	%
2021년	2,119,542	408,747	19.3
천안시	658,295	73,002	11.1
공주시	104,319	27,882	26.7
보령시	99,673	26,398	26.5
아산시	317,626	42,849	13.5
서산시	175,623	32,745	18.6
논산시	116,315	31,357	27.0
계룡시	43,128	5,244	12.2
당진시	166,218	31,546	19.0
금산군	51,227	16,140	31.5
부여군	65,039	22,840	35.1
서천군	51,657	19,087	36.9
청양군	30,750	11,120	36.2
홍성군	99,753	24,209	24.3
예산군	78,048	24,820	31.8
태안군	61,871	19,508	31.5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 특히, 충남의 1인 고령자가 123,244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31.1%에 해당하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노인은 21,114명임

〈표 2-4〉 충남의 독거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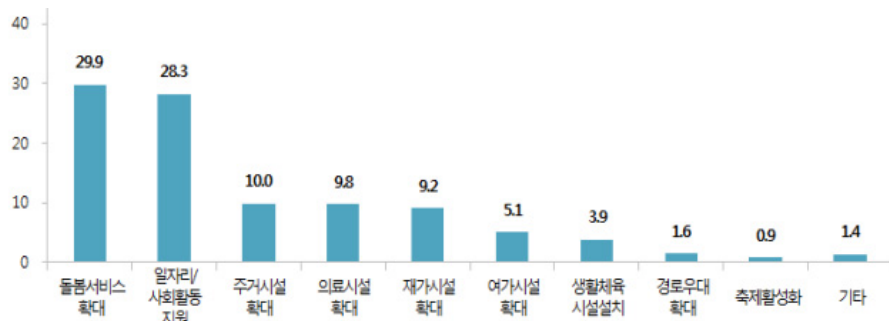
(2021.12기준)

시/군	독거노인 수				65세이상 노인수
	계	독거노인 비중	기초생활 수급노인	일반노인	
계	123,244	31.1	21,114	102,130	396,546
천안시	19,315	26.8	5,290	14,025	72,151
공주시	8,245	29.8	1,248	6,997	27,675
보령시	8,390	32.0	1,238	7,152	26,211
아산시	12,173	28.7	2,957	9,216	42,355
서산시	8,788	27.1	1,321	7,467	32,436
논산시	10,864	35.0	1,827	9,037	31,044

시/군	독거노인 수				65세이상 노인수
	계	독거노인 비중	기초생활 수급노인	일반노인	
계 룡 시	1,502	29.2	193	1,309	5,141
당 진 시	8,441	26.9	908	7,533	31,331
금 산 군	6,038	42.2	743	5,295	14,318
부 여 군	7,525	33.2	1,038	6,487	22,638
서 천 군	6,169	32.5	691	5,478	18,988
청 양 군	3,557	32.2	268	3,289	11,059
홍 성 군	8,069	31.2	1,084	6,985	25,859
예 산 군	8,418	40.2	1,587	6,831	20,918
태 안 군	5,750	40.0	721	5,029	14,377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 충남사회조사(2019)결과 고령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돌봄서비스확대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주거와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 : 충남사회조사(2019)

[그림 2-2] 충남 고령자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 충남의 경로당수는 5,806개이며, 회원수는 240,174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58.8%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술한 바와 같이 충남 고령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돌봄과 주거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주거·돌봄·의료의 통합적 공급 및 서비스 개발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5〉 충남 시군별 경로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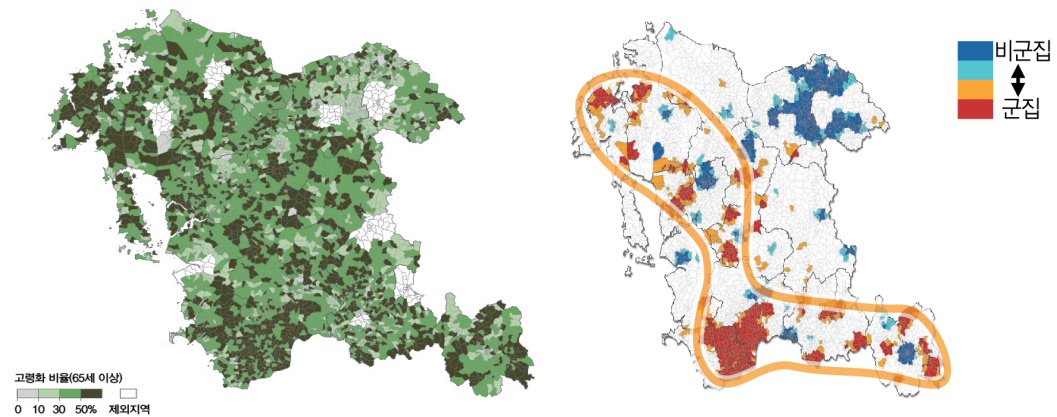
(2021.12기준)

시군명	읍면동수	분회수	경로당수	경로당 회원수		
				합계	남	여
계	207	210	5,806	240,174	105,165	135,009
천안시	30	30	742	27,280	11,026	16,254
공주시	16	16	423	19,796	8,545	11,251
보령시	16	16	405	18,165	8,366	9,799
아산시	17	17	529	21,100	8,878	12,222
서산시	15	15	387	20,364	8,909	11,455
논산시	15	15	517	22,101	9,696	12,405
계룡시	3	3	36	1,551	630	921
당진시	15	15	343	18,736	8,420	10,316
금산군	10	11	338	10,804	4,787	6,017
부여군	16	16	462	16,960	7,773	9,187
서천군	13	14	338	11,930	5,395	6,535
청양군	10	10	303	8,532	3,922	4,610
홍성군	11	11	371	14,892	6,331	8,561
예산군	12	13	379	16,744	7,525	9,219
태안군	8	8	233	11,219	4,962	6,257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 충남 고령자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인접도시보다는 그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고령자 선호 복지시설·서비스와 공간적 분포 상황을 연계한 고령친화 공간전략 및 정주환경 강화 정책 추진이 요구됨



자료: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정책지도, 2015.

〔그림 2-3〕 행정리별 고령화 실태 및 핫스팟 분석

3) 충남의 고령친화도 분석

- 충남의 고령친화도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와 국책연구기관(건축공간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한 고령친화도 분석결과를 살펴봄

(1) 충남 고령친화 관련 조례

- 충남도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를 위해 민선7기부터 고령자를 배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충남은 2019년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배경이기도 함
-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에는 충남도지사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외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충남 고령친화지표 분석

- 건축공간연구원의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2021.03)’에서 충남도의 고령친화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진단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8대 진단영역을 참조하여 물리적 환경지표(외부환경, 교통, 주택), 사회적 환경지표(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교육과 정보화), 서비스 환경지표(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
 - 진단 결과는 전국평균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별로 상이한 값의 범위와 단위 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였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표값은 전국평균 50점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평균(50)에 비해 충남의 고령친화지표 중 물리적 환경지표는 양호하나, 사회·서비스 환경지표 중 일부(사회참여, 교육·정보화, 복지서비스)는 낮게 나타남

<표 2-6> 충청남도 분야별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T-score	각 영역지표의 전국 평균
물리적 환경	외부환경	54.8	50.0
	교통	54.5	
	주택	55.5	
사회적 환경	사회참여	49.4	
	존중 및 사회통합	54.7	
	교육 및 정보화	47.4	
서비스 환경	의료 서비스	53.1	
	복지 서비스	49.1	

자료 : 고영호 외(2021) 인용



자료 : 고영호 외(2021) 인용

[그림 2-4] 충청남도 분야별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 고령친화도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2-7〉 참조)

‘고령자 존중’(66.9), ‘고령자 도로횡단 안전성’(63.0), ‘고령자 외부활동 안전성’(60.4), 영역은 해당 소분류지표의 전국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대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 현황(66.9), 고령인구 대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47.9),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78.0), CCTV 설치 현황(61.2), 안전비상벨 설치 현황(57.2), 보안등 설치 현황(62.8), ‘고령자 생활 서비스 접근성’(44.8), ‘고령자 외부활동 쾌적성’(46.5)은 전국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

기타 거주 고령인구 대비 어르신 무료급식소 설치 현황(45.1), 재가노인복지시설 조성(44.4), 대기질(미세먼지) 현황(42.2), 거주 고령인구 대비 공중화장실 조성 현황(50.9)으로 조사되었다.

〈표 2-7〉 충청남도 분야별(소분류)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중분류	소분류	T-score	각 영역지표의 전국 평균
외부환경	고령자 외부활동 안전성	60.4	50.0
	고령자 외부활동 쾌적성	46.5	
교통	고령자 주요시설 접근성	48.9	
	고령자 도로횡단 안전성	63.0	
주택	고령자 주거 안정성 및 생활편리성	55.5	
사회참여	고령자 참여기회 다양성	49.4	
존중 및 사회통합	고령자 존중	66.9	
	고령자 경제적 자립성	48.6	
교육 및 정보화	고령자 교육기회 접근성	47.9	
	고령자 교육기회 다양성	46.5	
의료 서비스	고령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	52.3	
	고령자 의료 서비스 편의성	50.9	
	고령자 건강 유지 실천	56.4	
복지 서비스	고령자 생활 서비스 접근성	44.8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접근성	48.6	
	복지예산 및 편의성	53.6	

자료 : 고영호 외(2021) 인용



자료 : 고영호 외(2021) 인용

[그림 2-5] 충청남도 분야별(소분류)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2. 고령친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1) 고령사회 대응의 개념적 특성

□ 고령자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연속성 담보를 강조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특성이 사회 전반의 주요 특징으로 대변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해외의 초기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정적 사회경제 파급효과에 집중(정순돌 외, 2011)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의 축소, 고령자 적합 일자리 부족, 경제적 어려움 및 불안정한 노후, 고령자 복지시설의 부족, 체력 및 활동 저하 등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 사회경제 파급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정적 사회경제 파급효과의 대응 방안으로는 고령자 연령기준 향상, 연금수령 시작 연령 연장, 임금피크제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을 통한 고령자의 사회경제활동 지속화 방안이 거론되었다(김경우, 2006).

□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의 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방향 설정 가능

분리이론은 고령자가 고령층 진입 이전의 기존 사회경제적 역할에서 고령층 진입 이후 분리되는 경향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분리이론에서는 고령자가 본인의 일터로부터 은퇴 등의 이유로 강제적·사회적 분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행위와 마음가짐 등에 집중한다.

활동이론은 고령자의 젊은 시절 사회경제적 역할이 노년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사회활동 유지 방안을 논의한다. 활동이론에서는 신체의 노화에 따라 고령자의 활동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사회경제적 활동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의 효과에 집중한다.

- 해외 주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활동이론에 기반하여 Active Aging 등의 개념 개발,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동의 유지와 강화에 집중함

해외의 최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Healthy Aging, Active Aging, Aging in Place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Healthy Aging(건강하게 나이들어가기)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등의 기반이 결국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령자의 건강 보장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물리적 생활환경 제공을 강조하는 개념이다(CDC, 2015).

Active Aging(활기차게 나이들어가기)은 고령자의 활동적 삶이 결국 건강을 보장한다고 보고, 상기의 활동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고령자의 적극적·능동적 사회경제 활동 참여와 자발적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물리적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WHO, 1994; WHO, 2002; Daatland, 2005; 김정대, 2004).

Aging in Place(기존 주택·주거환경에서 나이들어가기)는 지역사회 내 증가하는 고령자의 의료·요양시설 입소와 입원을 최대한 지양하며 고령자에게 익숙한 기존의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가능한 오래 머물며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Aging in Place에서 Place를 주택으로만 한정하여 이해·해석함의 한계와 기존 주택·주거환경이 미흡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기존 환경에 거주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Aging in Community(정든 마을·생활환경에서 나이들어가기 /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 Aging in Community 개념은 장소, 서비스, 주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 따라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Forsyth & Molinsky, 2020)

장소 관점의 Aging in Community 개념은 현 주택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가능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관점의 Aging in Community 개념은 요양시설 입소를 회피하는 것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요양시설 이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주거 결정권 관점의 Aging in Community 개념은 고령자 욕구에 따른 주거 환경 결정에서 국가의 지원의 유무에 따른 주거환경 선택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Aging in Community에 따른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본질적 추구는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관계성 유지에 집중할 필요를 강조한다.

〈표 2-8〉 Aging in Community 개념의 구분과 관련 정책 지원 특성

구분		일반 특성	고려 가능한 정책 지원	잠재적 한계
장소 관점	현 주택 거주 사망 시까지 무조건 유지	· 기존 생활환경 유지 · 이사비용 없음	· 주택개조 지원	· 노후 주택의 개조 한계 · 노후 주거환경으로의 서비스 연계 한계 · 무리한·무조건적 기존 주거 유지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한 현 거주 유지	· 일반적 상황 · 후기고령 등 생애주기 전환에 순응	· 후기고령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집중 지원	· 집중 돌봄·의료 목적의 주택으로만 지원 가능 · 가능한 유지에 대한 개인적 이해 다름
	현 생활범위·동네 거주 유지	· 적정 규모 주택으로 이주 · 동일한 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성 유지	· 적정 규모의 주거 공급 · 다양한 주거 선택지 지원	· 현 동네·생활 범위에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하거나, 기존 대비 고비용의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
서비스 관점	요양시설 무조건 회피	·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 가족과 합가하더라도 시설 입소를 회피	· 고령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지원	·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부족 초래 가능 · 가족의 돌봄 부담 증대
	현 요양시설 유지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타 시설로 이동하지 않음	· 하나의 요양시설에서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의 부담 증대
결정권 관점	다양한 주거 선택	· 고령자 스스로 결정	· 개별 주택의 제공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이주
	다양한 주거 지원	· 국가의 지원 하에 고령자 개인이 판단	· 양질의 주거 선택지 제공 ·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 고령자 개별 생활양식에 맞춘 삶의 질 제고와 이주

자료: Forsyth & Molinsky, 2020; 교영호 외, 2021

- 고령사회 대응의 개념적 특성은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고령자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의 연계를 통한 고령자의 독립적 사회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음

Healthy Aging, Active Aging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고령자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활동을 통해 고령자 개인이 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지양하고,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역할의 지속적 수행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를 강조한다.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고령자의 활발한 사회참여 도모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고령자의 지역사회 이탈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시설·병원 입소·입원을 지연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필요를 강조한다.

Aging in Place가 협의적·무조건적 재가생활 유지로 이해됨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극복을 위해 Aging in Community 기반의 정책 수립이 주목받고 있다.

- 고령사회 대응은 결국 노인(Aged People)만이 아닌 모든 주민이 나이 들어 가는 과정(Aging)을 지원하는 물리적 생활환경과 해당 과정이 건강하고 활기차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국내에서는 Age-friendly City 또는 Age-friendly 정책이 노인만을 위한 도시, 정책 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고령사회 대응 개념적 특성은 노인만을 위한 정책 수립과 생활환경 조성이 아닌 모든 주민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경험하는 신체·정신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서비스의 일체적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충남 거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서비스 환경의 연계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충남도민이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고령친화적(Age-friendly) 물리·사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2) 고령사회 대응 정책적 특성

(1) 국제사회

- UN, OECD, WHO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고령사회 대응의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국가의 구체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요구함

UNFPA(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는 고령자 증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극복을 위해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고령자의 건강, 안전, 독립성 유지를 지원하고 이에 기반한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방향의 국가정책 수립 필요를 강조한다(UNFPA, 2015).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고령자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의 부담 증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시설·서비스 제공과 가정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필요를 제기하였다(Casey 외, 2003).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주요 가치로 Active Aging과 Aging in Place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WHO, 2007).

- WHO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을 제시하고 회원국가의 지자체별 구체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수립을 도모함

WHO는 2006년 33개 회원국의 노인, 노인 돌봄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고, 고령친화적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8대 영역의 84개 세부항목을 정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을 제시하였다(정경희, 2010; 정은하, 2014).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은 고령친화도시를 정책·서비스, 생활환경, 사회구조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7).

WHO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노인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지역 주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표 2-9〉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방향과 세부내용

분 야	영 역	세 부 내 용
물리적 환경	① 외부 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공공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녹지와 외부좌석이 충분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 -보도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보행자 공간이 확보되어 장애물이 없다 -보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폭이 확보되고 있어 차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횡단보도가 충분하며, 미끄럼 방지처리, 시각 및 청각적 신호, 적절한 횡단시간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장애수준과 장애유형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운전자가 교차로나 보행로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한다 -별도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다 -적절한 조명, 경찰순찰, 지역교육 등을 통하여 외부환경의 안전이 촉진되고 있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접근가능하다 -노인을 위한 별도의 창구 등과 같은 특별고객서비스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건물이 충분한 좌석, 화장실, 엘리베이터, 램프, 계단, 미끄럼 없는 바닥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내외에 적절한 표지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화장실의 문들이 충분하고 이용하기 수월하며,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
	②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 ation)	-공공교통비가 안정되어 있고 분명히 제시되며 적절한 수준이다 -공공교통이 신뢰할만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자주 운행된다 -공공교통은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며 분명하게 식별되는 노선과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차량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접근이 원활하고 혼잡하지 않고 우선석이 준수되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특별 수송 수단책이 있다 -운전자들은 정해진 정류장의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정차하며 탑승자가 자리를 잡은 다음 출발한다 -정류장은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 접근가능하며 안전하고 청결하며 아름답고 적절한 좌석과 차양을 갖춘 대합실이 조성되어 있음 -노선, 운행시간, 특별 욕구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완벽하고 접근가능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교통이 제한된 곳에는 자율적인 교통서비스가 제공된다 -택시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절하며 운전자가 친절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도로가 잘 관리되고 배수가 잘 되며 조명이 잘 갖추어져 있다 -통행흐름이 잘 통제되고 있다 -차도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

분 야	영 역	세 부 내 용
		-교통표지판과 교차점이 잘 보이며 적절한 위치에 있다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자 교육과 보수과정이 장려되고 있다 -주정차 지역이 충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우선 주정차 지역이 확보되어 있다
	③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안전하며 서비스와 지역사회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 있다 -충분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관리 및 지원서비스가 있다 -주택이 잘 건축되어 있으며 날씨로부터 안전하고 안락한 보호를 제공한다 -내부 공간과 평면구성이 모든 방과 통로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개조 방안과 물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자는 노인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외관이 준수한 행사장이나 활동공간이 접근가능하고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노인이 참여하기에 편리한 시간에 행사가 개최된다 -활동이나 행사에 혼자서 또는 동반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숨겨진 비용이나 추가비용 없이 적절한 비용으로 활동이나 볼거리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이나 행사에 관하여 시설에 접근성이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 좋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노인집단이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을 포함하는 모임이 여가센터,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공원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있다
사회적 환경	⑤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어떻게 노인에게 적절한 공공, 자원봉사, 상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인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에 맞는 공공 및 민간서비스와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정중하고 우호적이다 -노인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며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연령 특화된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지역 사회적 그룹의 활동과 행사가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노인이 꼭 포함되어 있다 -학교가 노화와 노인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활동에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및 과거의 노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정받고 있다 -불우한 노인에게 대한 적절한 공적 및 자원봉사, 사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⑥ 시민 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훈련, 표창, 지침, 개인적 비용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폭넓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있다 -고령고용자의 양적 확대가 촉진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연하고 적절한 유급노동기회가 촉진되고 있다 -채용, 고용유지, 승진, 훈련 등에 있어 연령에 기초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분 야	영 역	세 부 내 용
		-작업공간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노인의 자영업이 촉진, 지지되고 있다 -고령노동자에게 은퇴 후 선택지에 대한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공공, 사적 및 자원봉사 영역에서 의사결정체의 노인의 회원가입이 장려 및 촉진되고 있다
서비스 환경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모든 연령층의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는 기본적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다 -정보가 정기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중앙화된 접근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정보제공과 노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구술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된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대일 정보를 얻고 있다 -공공 및 상업서비스가 신청에 의하여 친절한 일대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문서, TV자막, 진열 등에 인쇄화 된 정보가 크기가 큰 글씨를 사용하고 있고 분명한 제목과 굵은 글씨로 주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인쇄물 및 구두의 커뮤니케이션이 짧고 직접적인 문장에 단순하고 친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동응답서비스가 천천히 분명한 사용법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어떻게 반복하면 되는지를 알려준다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은행기기, 표발매기 등과 같은 전기기기의 버튼이 크고 글씨가 크다 -정부기관, 커뮤니티센터,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의료 및 지역 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며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건강 및 지역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가 건강 및 개인보호서비스, 가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 및 사회서비스가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재가보호시설과 노인주택이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건강 및 지역서비스 기관이 안전하게 건축되었으며 충분히 접근가능하다 -노인을 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분명하고 접근가능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전달이 잘 조율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간단하다 -모든 직원이 노인을 존중하고 우호적이며 노인에게 봉사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건강 및 지역지원서비스에 접근을 방해하는 경제적 장벽이 최소화되어있다 -모든 연령을 위한 자원봉사서비스가 촉진되고 지지되고 있다 -시체매장장소가 충분하며 접근가능하다 -지역사회의 비상계획에 노인의 취약성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 WHO(2007)

- WHO는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국가의 지자체별 구체적 고령친화 사업 시행을 도모함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WHO 회원국가의 지자체별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통해 회원자격 취득과 5년 주기의 회원자격 갱신 절차가 있다.

WHO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지자체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에 기반하여 지역의 분야별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사업시행과 성과 모니터링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WHO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회원자격을 취득한 지자체는 전 세계 회원도시·지역의 고령사회 현안과 대응 정책,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되며, 각 지자체는 고유한 고령사회 이슈 대응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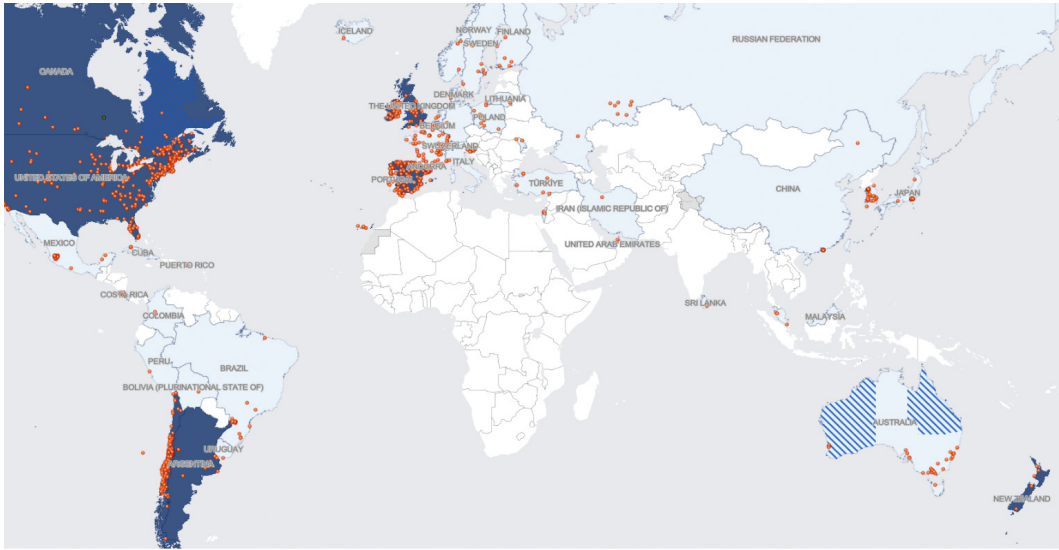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47개국의 400여개 지자체가 회원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이 최초 회원자격을 취득한 이래 총 37개 지자체가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³⁾ (WHO Age-friendly World, 2022; 서울시 고령친화서울, 2022).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의 과정은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현황 점검, 계획 수립, 이행, 성과평가로 이루어진 체계 마련과 가입신청 이후 5년 주기 갱신 신청의 절차로 진행됨

고령친화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해 WHO는 계획 ▶ 이행 ▶ 평가로 구성된 5년 주기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단계는 초기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해당 도시의 고령친화성을 평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부터 노인을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2단계는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수립된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지표의 변화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3) 충청남도의 경우 2018년 논산시의 회원자격 취득을 시작으로, 2021년 공주시, 2022년 부여군이 회원자격을 취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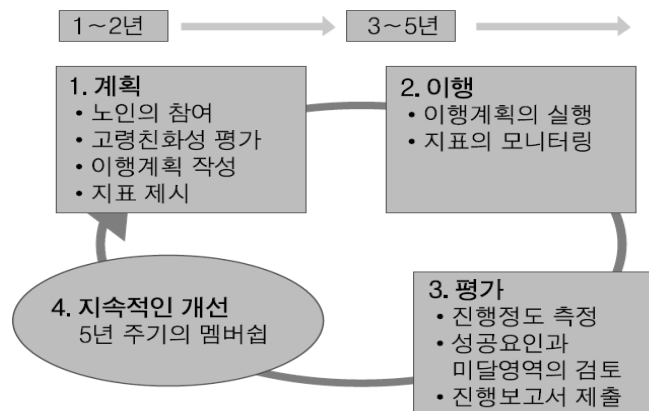


자료: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

[그림 2-6]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지자체 현황

3단계는 이행된 계획을 평가하는 단계로 3-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마지막 연도 하반기에 3단계의 평가를 실시함. 이 최종 평가단계에서 평가결과와 성공요인, 달성하지 못한 요인에 대한 반성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은 5년 주기의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통해 고령친화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정경희, 2010).



자료: 정경희, 2010, pp.102-112

[그림 2-7] 고령친화도시의 구축 과정

(2)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노인복지 대상의 급격한 증가로 복지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관심 증대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고령친화적 생활환경과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일체적 대응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비율 증대 등 고령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지며, 고령자 대상 중심으로 복지정책 분야에 한정되었던 초기의 대응에서 해당 인구 구조변화가 미치는 사회 주요 분야(의료, 교육, 주택, 도시, 노동, 여가 등)의 파급력 증대로 국가의 전 분야 정책에서의 다각적 대응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은 과제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제시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의 물리적/비물리적 연계를 강조한다.

-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 일자리, 여가문화, 주거·교통, 권익증진 분야 과제를 제시함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가능한 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점진적 출산 회복,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하였다.

1~3차의 해당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응 부분 성과로는 고령층 빈곤 완화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 강화, 고령친화 일자리·주거환경의 기틀마련 등이 있으며, 한계로는 여전한 빈곤한 노후생활, 더욱 길어진 노후생활 대비 살던 곳에서의 돌봄 부족,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2022년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고령자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과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 국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과제를 발굴함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 지원의 확대, Aging in Place 실현의 주거모형 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고령자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공급과 고령자의 주거와 의료·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지표개발과 평가 추진,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 모형 개발,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현황 점검, 고령친화 지구 지정과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로의 베이비붐 세대 이주를 도모하는 고령친화 생활단지 조성 등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전략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협업 기반의 고령친화 생활주택 공급,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을 노력 중이다.

-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75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의 8대 영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택,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지역사회의 지원과 건강서비스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외부생활환경, 교통, 의사소통·정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국내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련 현황

법령명	지역명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주시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김제시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원시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해군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논산시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남구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유성구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동해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밀양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남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수영구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여군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산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동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천구

법령명	지역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용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구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예산군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울주군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중구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원주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령군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왕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익산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전라남도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진주시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창원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충청남도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칠곡군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통영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평택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남시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해남군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화순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9.30. 접속

3) 고령친화도시 관련 선진사례

□ 미국, 런던 등 고령사회를 선경험한 해외 주요 국가는 지역사회 중심, 고령자의 생활권 규모 내 고령친화적 주택 및 주거환경 조성과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

미국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세계 최초로 가입승인을 얻은 뉴욕시의 고령친화지구 조성 사업, 기존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밀집거주하는 고령자 대상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NORC 사업, 고령친화 주거 및 고령자 의료·돌봄 서비스를 일체화한 신규 생활단지 조성을 통한 입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CCRC 사업, 대학 캠퍼스와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연계하는 UBRC 사업 등이 있다.

일본은 전통적 도시재생 사업과 고령사회 대응 과제를 연계하여 고령자 도보 생활권 내 고령자 거주·의료·복지의 서비스 환경을 일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의료·복지마을만들기 사업, 미국 UBRC 사업을 벤치마킹한 일본판 UBRC 사업 등이 있다.

영국 런던의 건강 뉴타운 조성사업, 노르웨이 오슬로의 고령·치매친화 지구 조성 사업 등 유럽국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선진사례가 확인된다.

(1) 미국

□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도입

뉴욕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으며, 궁극적인 뉴욕 도시계획의 목표에 고령자의 생활양식과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당시 블룸버그(Bloomberg) 뉴욕시장의 뉴욕의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타운홀 미팅, 포커스그룹인터뷰, 고령시민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뉴욕시 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도입을 위해 WHO가 제시한 8개 기준요인에 따라서 뉴욕시 고령친화도를 진단하고 SWOT 분석을 통해 뉴욕시 차원의 구체적 핵심 전략을 도출하였다.

□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도입을 위한 영역별 전략

뉴욕시는 뉴욕의 지역사회 평가에 기초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지침서인「Age Friendly NYC」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뉴욕 고령친화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4개의 핵심영역과 15개의 세부영역에서 도출된 5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WHO 가이드의 기본요인을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노인들의 욕구 파악과 지역 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뉴욕시 특성에 맞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2-11〉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영역별 요인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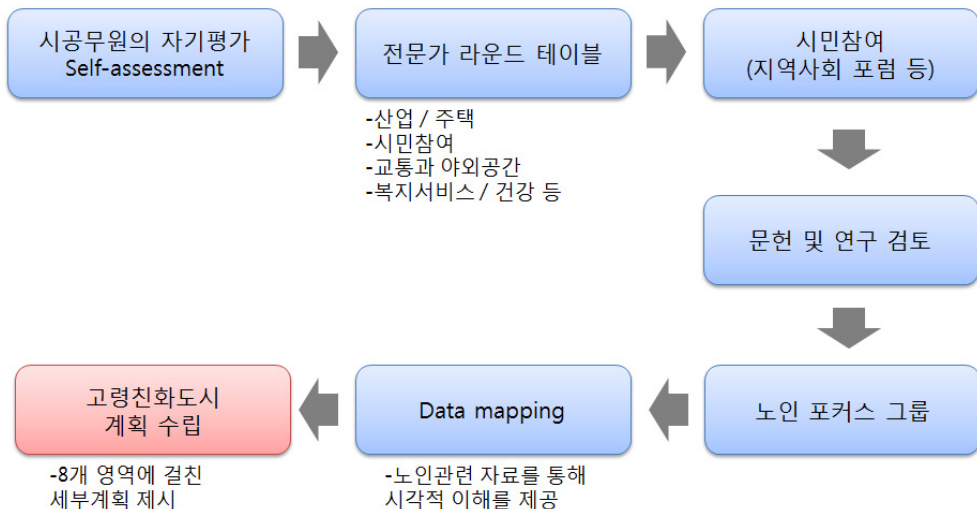
영역	세부요인	핵심전략
지역 사회와 시민 참여	고용과 경제적 안정	•노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 노인유급일자리 확대 · 고용기회 확대
	자원봉사	•세대간 자원봉사와 학습기회 제공 · 타임뱅크 등 새로운 자원봉사 제공
	문화, 여가활동	•시니어센터와 도시간 파트너십 구축 · 시니어센터 프로그램 예술가 모집 •문화예술행사 노인할인혜택의 원스톱 정보제공
	정보와 계획	•노인중심의 NYC & Co. 웹사이트 구축 · 지역사회 노인친화성 진단 •노인국 웹사이트 재설계와 정보수준 확대
주택	적정비용 주거개발	•저소득층 주거지원기금과 건설과정에서 노인수요 고려 •노인주택건설시 주차규정과 용도지역 규제완화 •주택 리모델링과 건설 위한 용자지원
	소유자와 임대거주자 지원	•주택수리비 용자지원 · 주거관련 법적지원 · 노인 임대자 보호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자연발생적 노인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취약노인에 대한 주거지원 바우처 제공 확대
공공 공간과 교통	교통 접근성과 비용적절성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개선 •특수이동서비스 효율성 향상 · 교통약자 노인대상 택시 바우처 개발
	고령 친화적 공공 공간 조성	•버스정류장 휴식시설 확충 · 주요장소 내 공중화장실 확충 •노인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재설계 · 고령 친화적 공원 조성
	미래계획	•환경보호단 제공과 노인의 식수참여 권장 •노인이동성 향상 위한 연구 ·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건강과 사회 서비스	건강관리계획	•노인 건강 관련 인식 제고 · 건강증진 위한 시니어센터 재설계 •건강보험 옵션 인식확대와 휘트니스센터 할인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노인지원	•낙상방지프로그램 실시 · 고위험군 노인대상 에어컨 무료보급 •실종노인홍보의 공공차원 확대 · 노인대상 범죄예방 캠페인 확대
	영양지원	•푸드스탬프 전화신청 실시와 아웃리치 캠페인 •NYC Green cart 프로그램 실시 · 식료품 구매 시 버스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와 가정배달급식프로그램 효율성 증진
	수발 및 장기요양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수발자의 교육 자료와 지원확대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장기 요양 보합 인식개선 교육
	완화 케어와 죽음의 준비	•완화치료 홍보 및 기존 완화케어프로그램 확대 •의사결정 불가 노인의 대리인 법제화 추진

자료: 서울복지재단(2010)

□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도입을 위한 과정

뉴욕시 고령친화도시의 목표는 시민이 고령자가 되어가면서도 독립적이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뉴욕 도시계획과 시정부 사업을 통해 뉴욕의 고령자 생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뉴욕시 공무원의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문가 및 시민 참여의 과정을 거쳐 노인 포커스 그룹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각적 매핑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8개 영역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8]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 과정

□ 뉴욕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 조성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소규모 생활권 내 주요 시설·장소·공간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령의 주민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함

뉴욕시는 2008년 민간 지원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뉴욕시의 주요 시설·장소·공간에 대한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09년 고령친화적 뉴욕시 조성을 위한 59개 정책사업을 제시하였다(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2017).

59개 정책사업에는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버스정류장 쉼터 조성, 도시벤치 확대 설치 등이 있다. 뉴욕시는 해당 정책사업의 집중적 시행 대상지로서 뉴욕시 맨하튼 자치구 내 4개 지구⁴⁾를 선정하고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사업지구(NYC Aging Improvement Districts)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시범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9~20%로 다양하나, 지역 면적은 4~8km²의 규모로 우리나라의 행정동 이하의 소규모 생활권 수준이다.

시범지구의 고령친화적 안전거리 조성사업(Safe Streets for Seniors Program)은 뉴욕시 교통국이 주관하며, 지구 내 고령자 보행사고 집중발생 구역을 대상으로 도로횡단시간 증대, 횡단구역 표시 명확화, 보행로 연석 재시공,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뉴욕시 교통국 홈페이지, 연도미상, 2022.10.1. 접속). 시범지구의 도시벤치 확대 설치 사업(CityBench Program)은 뉴욕시 교통국이 주관하며, 고령자의 보행 편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지구 내 고령자 활동이 많은 구역에 집중적으로 벤치를 설치하였다(뉴욕시 교통국 홈페이지, 연도미상, 2022.10.1. 접속). 시범지구의 고령자 수영 강좌 사업(Senior Swim Program)은 뉴욕시에 위치한 16개 수영장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 고령자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스쿨버스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에 착안하여 해당 시간대에 고령자가 무료로 스쿨버스로 타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인 사례이다(WHO, 2011).

-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ing Retirement Communities, 자연발생적 고령자 마을 지원 사업)는 노후 주거지역 내 청년층의 이탈과 기존 거주자의 고령화로 형성된 커뮤니티 대상 주택개조,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NORC는 노인을 위해 계획·설계되지 않았지만 주거단지 조성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부분 노인만이 거주하게 되는 커뮤니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고령자 집중 거주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령친화적 생활환경으로의 개선,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등이 요구된다(Hunt & Gunter-Hunt,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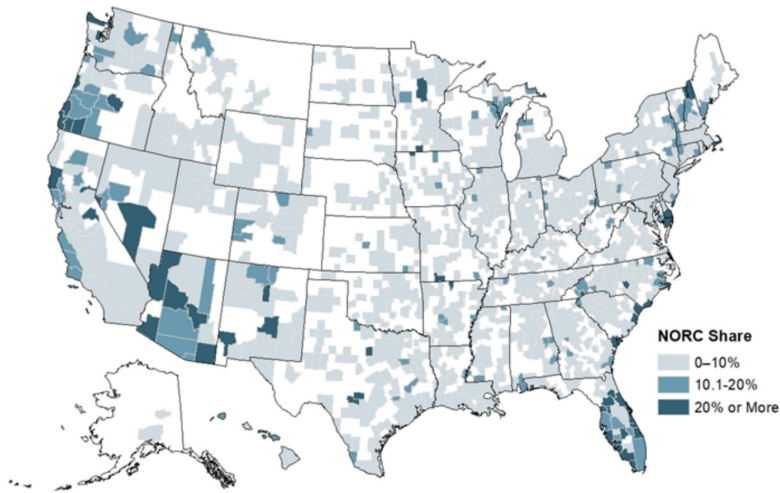
4) East Harlem, the Upper West Side, Bedford Stuyvesant, Pelham Parkway 총 4개 지구

NORC 지정은 해당 지역 주 정부가 담당하며, 지정 이후 NORC의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운영은 승인된 비영리단체가 담당한다(Paying for Senior Care, 2019). NORC에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식사 배달, 재가 돌봄, 방문 의료, 가사 도우미, 상담, 사회참여활동 기회 지원 등이 있다(Greenfield 외, 2013; Maclaren 외, 2007). NORC의 고령친화적 주택개조 및 고령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The Older Americans Act」에 근거한 보조금과 해당 지자체(주 정부)의 NORC 지원법⁵⁾에 근거한 보조금이 통합되어 지원되며, 기타 비영리단체의 기금 등의 지원도 일부 이루어진다.

미국 전역에 약 100여개의 NORC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의 NORC 사업은 뉴욕 주에서 추진 중이다(Greenfield 외, 2013). NORC는 다세대 아파트, 노년층 밀집 콘도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거단지 모습과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마을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Bronstein & Kenaley, 2010; Parker, 2020).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NORC 지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고령자의 다수는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계층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FineLaw Staff, 2021). 뉴욕 주는 NORC 지정 기준으로 노인만을 위해 계획·설계되지 않은 주거단지일 것, 명확한 주거단지 경계를 가지며 해당 구역 내 주택 중 최소 40%는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FineLaw Staff, 2021).

5) 미국에서 지정된 NORC의 다수가 위치한 뉴욕 주의 경우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에 근거하여 지원함



자료: Harvard University, 2021

[그림 2-9] 미국 NORC 지정 현황



자료: Queens Community House, 2022

[그림 2-10] 미국 뉴욕 주 Forest Hills의 NORC 생활 모습

□ 미국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연속돌봄형 고령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는 민간 중심의 신규 주거단지 개발 또는 지역 개발 형식으로 조성된 고령친화 주거환경 및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의 일체적 조성 사업임

CCRC는 입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되는 다양한 주거 선택권⁶⁾, 입주 고령자의 개별적 건강 증진 욕구에 맞춤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모델이다(Zarem, 2010). CCRC는 미국 주 정부의 개발승인,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자 및 의료·복지 서비스 사업자 연계 기반 개발과 단지 조성,

6) CCRC는 주거단지 내 아파트, 단독주택, 생활지원 주택, 요양원 등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입주 고령자는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을 선택, 단지 내 주거를 이동하며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주거환경, 연계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음

고령자 주거·의료·복지 전문 운영사업자의 운영으로 조성된다. 미국의 일반적 CCRC는 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의 경우 500가구 규모를 넘는 대단지로 조성되는 경우도 확인된다(Zarem, 2010).

미국에는 2010년 기준 약 2천 개의 CCRC가 개발·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CCRC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고령자는 1997년 약 35만 명에서 10년 후인 2007년 약 7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hippee, 2009). CCRC 입주 자격요건은 만 55~65세의 고령층 진입 초기에 있는 독립적 일상 생활이 가능한 건강상태의 고령자에 한정된다. CCRC의 입주를 위해 고령자는 약 33만~100만 달러 규모의 입회비와 월 3천~6천 달러 규모의 주택임대료 및 서비스이용료 등 높은 입주비와 고정 생활비에 대한 지불능력 증빙이 요구된다. CCRC 입주 고령자를 위한 주요 혜택으로는 고령친화적 주택 및 생활환경 제공, 전문적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각종 소매점 및 세탁·가사노동 등의 상용 서비스 제공,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온천, 도서관, 산책로 등의 커뮤니티 시설·서비스 제공이 있다(Stanley, 2021).

미국 CCRC 조성 사업 관련하여 미국의 주 정부 역할은 지원 보다는 규제의 역할이 크다. 미국 주 정부는 CCRC 입주 고령자의 상당한 재정적 지불에도 불구하고 CCRC 사업의 부도·폐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CCRC 조성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재무 상태 모니터링과 감독, 소비자(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중심으로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 Knight Frank's Retirement Housing, 2016

[그림 2-11] CCRC 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 대응의 다양한 주거옵션 제공

〈표 2-12〉 미국 CCRC의 연속돌봄형 주거환경 제공

주거 구분	고령자 건강상태	주거복지의 서비스 연계
자립주거	· 자립생활 가능 · 건강 노인	·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식사, 집안일, 세탁서비스, 응급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음
생활보조주거	· 보조를 통한 일상생활 영위 · 허약 노인	· 자립주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목욕, 옷 입기, 약복용, 기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보조 (치매 케어 포함) · 가능한 한 개인이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호만을 제공 · 재활을 돕는 재활센터
너싱홈	· 전적 지원 필요 · 의존적 노인	· 재활이나 24시간 간호 서비스와 같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 간호보호가 CCRC 내의 부속 진료소나 간호시설, 근처의 관련 시설에서 제공
커뮤니티 시설	-	·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 건강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자료: Yoo, 1996; 고영호 외, 2021

□ 미국의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연계형 고령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는 대학·민간 중심의 대학 캠퍼스 내 신규 주거단지 개발 형식으로 조성되며, CCRC의 특성과 더불어 고령자의 평생교육·사회활동 지원 강화 특성을 나타냄

미국의 CCRC는 연속돌봄형 주거환경이 하나의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입주 고령자의 외부사회와의 단절, 사회참여활동의 부족 등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UBRC는 이러한 CCRC 입주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학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 CCRC를 조성하고, 대학과의 연계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한다.

UBRC는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과 조성된 주거단지 간의 연계성에서 개별 사례의 차이를 보이나, 고령 거주자의 신체·정신적 활동을 도모하고 대학 연계 커뮤니티를 통한, 여가, 체육, 교육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Stevenson, 2014). UBRC는 CCRC에서 파생된 고령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거주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단계별 주거유형을 단지 내에 마련하고 거주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거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영호, 2021). 미국의 UBRC는 약 100여 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Stevenson, 2014).

미국 UBRC의 조성 초기에는 해당 UBRC 개발에 참여한 대학의 교직원, 졸업생으로 UBRC 입주 고령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으나, 점차 지역의 고령자도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UBRC의 개발과 운영은 대학이 모두 담당하는 경우, 대학은 개발에만 관여하고 운영은 전문 운영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대학은 개발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 대학 인근의 민간 주거단지 개발 이후 대학은 사회참여 프로그램만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경우 등 주거단지의 조성 및 개발, 운영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미국 주요 UBRC의 대학 참여 현황

주(State)	대학교	UBRC	대학의 UBRC 개발 참여	대학의 UBRC 운영 참여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Capstone Village	○	
Arkansas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College Square	○	○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niversity Retirement	○	○
Illinois	Benedictine University	Villa St. Benedict	○	○
Indiana	Anderson University	University Village Condominium	○	○
Indiana	Indiana University	Meadowood Retirement Community	○	○
Massachusetts	Lasell College	Lasell Village	○	○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Commons	○	
Ohio	Ohio Wesleyan University	Austin Manor	○	○
Ohio	Oberlin College	Kendal at Oberlin	○	
New York	Ithaca College	Longview Retirement Community	○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Village at Penn State	○	
Florida	University of Florida	Oak Hammock at the Univ. of Florida	○	

자료: Skular & Jacobson, 2007; Stevenson, 2014; 김미희·김석경, 2015; 고영호 외, 2021

(2)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내 시설·장소·공간의 고령친화적 조성사업을 마을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내 포괄적 의료·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도모함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역 내 고령자의 모든 일상생활이 지원되며, 일상에서 건강증진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포괄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입지적정화 계획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복지·건강·의료 지원 사업이 지역 내에 연계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지침’에서는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주민의 건강의식 고취 및 운동습관 형성, 커뮤니티 참여 활동 제고, 일상 도보생활권 내에 도시 기능의 계획적 확보, 고령자의 걷기를 유도하는 보행공간 형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연계가 1차적으로는 일상 도보생활권 내에 형성되도록 지원하며, 부수적인 2차 생활기능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 기타 오픈스페이스의 제공 등을 제시한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14, p.91

〈그림 2-12〉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 개념도

(3) 영국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평생주택, 평생이웃(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런던시 동부의 Barking 수변지구에 건강 뉴타운 조성 사업(Barking Riverside Healthy New Town)을 계획함

영국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주택 수요 충족을 주거정책의 주안점으로 강조하고, 2020년까지 300만 호의 고령친화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영국 중앙정부는 모든 주민들이 고령화되는 과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생주택, 평생이웃’ 전략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평생주택, 평생이웃’을 연령, 건강, 장애와 무관하게 주택과 교통, 공공서비스 및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한 환경으로 정의하고, 정책시행의 단위를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로 구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평생주택, 평생이웃’ 정책실현의 무대로 선정된 런던 동부지역의 Barking 수변지구는 1.79km²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약 25,000명을 수용하는 10,800 가구 공급이 계획되었다(Orr & Joseph, 2013). Barking 건강 뉴타운은 토지용도 혼합을 통해 대중교통과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주거·상업시설, 돌봄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가문화시설 개발이 계획되었다(Orr & Joseph, 2013; Greater London Authority, 2016).



자료: Mayor of London, 2015, p.86

〈그림 2-13〉 영국 런던의 건강 뉴타운 조성계획

(4)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⁷⁾

□ 고령친화도시 도입

캐나다는 1986년부터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를 표방하였고, 2007년 WHO 고령친화도시 도입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포함하여 4개 주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007년부터 주정부에서 고령친화도시 예산을 책정하고, 2008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침 발표(Seniors in British Columbia: A Healthy Living Framework) 하였다.

주정부는 소속 지역정부의 공동 예산지원 프로그램(Union of BC Municipalities grant program)을 구성하고 30개 지역정부에 고령친화도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령사회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2007년~2010년 1기 고령친화도시가 실행되고 참여지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고령친화 브리티시 컬럼비아(AFBC)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추가 예산지원, 지역 정부의 고령친화도시 인증프로그램, 기존 추진지역의 지속지원, 신규추진지역의 지침과 자원제공 등을 제공하였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령친화도시 구성요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또한 WHO 고령친화도시 지침에 기반하여 물리적

7) 캐나다 브리티컬럼비아 사례는 최희경(2016)의 자료를 참고함

환경, 주거, 사회적 환경, 참여 기회, 공식 비공식적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서비스, 교통선택권, 의사소통과 정보 등 7개 부문 영역을 설정하였고 이를 WHO 가이드라인 8대 구성영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구성영역을 WHO 지침과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구성은 WHO의 구성요인을 따르고 있지만, ‘참여기회’ 영역에 WHO의 ‘존중 및 사회통합’ 등의 요인을 포함시키고 ‘사회적 환경’ 영역에 대해 가족 및 이웃 등 관계와 소득수준, 문화와 같은 환경을 포함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노인 삶의 질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고령친화도시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을 주요 영역으로 포함시켜 브리티시 컬럼비아만의 고령친화도시의 특색을 나타낸 주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Menec et al, 2011). 이러한 특징은 고령친화도시 도입 초기 물리적 환경 요인을 강조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존중과 통합,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uffel et 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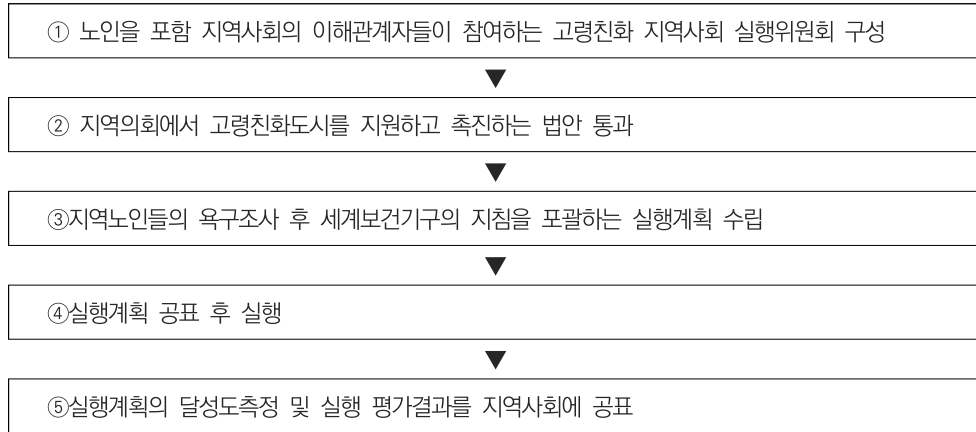
〈표 2-14〉 WHO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령친화도시 영역

구성요소	세계보건기구 8대 구성영역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7대 구성영역
물리적 환경요소	외부공간과 건물 교통영역 주거영역	물리적 환경 교통 선택권 주거영역
사회적 환경요소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 존중과 사회적 통합	참여기회
	-	사회적 환경
	의사소통과 정보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복지서비스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서비스

□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령친화도시의 추진방식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캐나다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은 다음 5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2-15〉 캐나다 고령친화도시의 추진 과정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실행 절차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필수사항이지만 지역 여건과 역량에 맞게 진행하며, 실행 이후 5년 단위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실행은 연방정부 지원과 자문을 받고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지만 자치구의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정부 단위의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참여하는 지역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예산 등을 지역정부 행정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부서에 고령친화도시 담당자를 배치하고 실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British Columbia, 2014).

○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령친화도시의 추진주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령친화도시 추진조직은 구성 성격에 따라 2주체 (AFCIT, AFLP)로 구분된다.

(지역별 실행위원회(AFCIT)) 실질적 추진주체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이며 지역 노인, 행정부서장, 담당공무원, 시민단체조직 대표, 대학 연구자, 일선기관 종사자 등 20-30명 내외로 구성됨. 실행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 핵심적 추진체로 전 과정에 걸쳐 행정과 결합하여 기획과 심의, 자문,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고령친화 지도자 협력위원회(AFLP)) 지역사회의 관련 이해당사자(노인복지기관, 장애인단체, 지역비영리기관, 지역상인과 기업체 연합, 법원, 다문화

센터, 의료보건기관 등)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동반자로서 조직 목적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과 결합하여 활동한다.

종합하면 연방정부, 주정부가 고령친화도시의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실질적 추진은 지역정부가 하며, 노인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핵심 실행주체로 상향식 접근으로 진행된다.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민간조직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공공과 수평적 관계를 가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5) 한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도입 과정

서울시 노인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2010년 이후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는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2010),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와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정책개발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차 연도에는 해외사례 조사와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2차 연도에 조례제정 및 가이드라인 도출, 3차 연도에 실행단계로 중점사업 개발과 시범사업 실행하고 4차 연도에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WHO에 '제1기(2013~201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2)'을 제출하였다. 본 계획에서 서울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고령친화도시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을 추진분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3~5년간의 실행단계 시기인 2013년 6월에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에 WHO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도입을 위한 조례와 가이드라인

서울시에 제정·공포한 고령친화도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고령친화 정책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례의 1장은 일반적인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다루고 있으며 2장~3장 일부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을 기초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달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들이 부합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정순돌·윤희수(2014)에 따르면 조례의 구체적인 항목별 분석결과 WHO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규칙, 명령 등의 구체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만 현 조례는 추상적 수준에서 WHO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우선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살기 편한 환경으로 통합하였고 사회적 환경도 제2인생 설계지원과 세대통합, 건강한 노후의 요인들로 재설계하였다.

〈표 2-16〉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서울시 가이드	
물리적 환경	외부환경 및 시설	살기 편한 환경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사회적 환경	여가 및 사회활동	활기찬 여가문화	제2인생 설계지원
	인적 자원의 활용	맞춤형 일자리	
	존중 및 사회통합	존중과 세대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 돌봄 및 건강	건강한 노후	

□ 특히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추진계획은 고령자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자치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상점을 비롯한 근린시설과의 연계성을 담고 있음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에 기반하여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입과 공동체적 돌봄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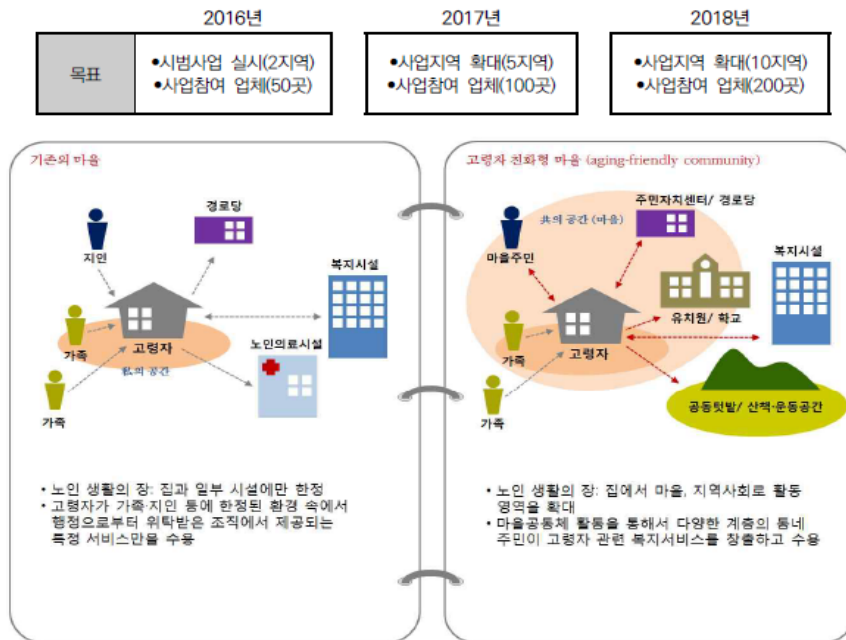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고령친화도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2.8.27)

〈그림 2-1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마을 추진전략과 목표

위와 같은 방향을 토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고령친화마을’을 추구한다. 공동체 중심의 고령자 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미흡한 부분을 주민 서로가 상호부조활동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한 마을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다.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7.8.27)

〈그림 2-15〉 2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마을 개념도

이처럼 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도시의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서울시는 민관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시범사업 지구 3곳을 선정(은평구 신응암시장, 종로구 락희거리, 종로구 송해거리)하고 주변 지역을 고령친화마을로 조성하여 지역 내 상점 중심으로 4억 1천만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사업의 내용으로 상점 출입구 턱을 없애고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와 쉬어가는 공간 및 시설들을 배치하였고 가격표 및 교통안내도의 글자를 키우는 등 고령 친화적 환경구축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주체들과 함께 시범사업 지역 상점업주 및 종업원 대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서울시 복지재단, 2017).

3. 고령친화 시설·서비스 관련 정책과 사례분석

1) 생활SOC 관련 정책과 사업

(1) 생활SOC 정책 동향

① 생활SOC 개념 도입

□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⁸⁾로서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본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에 해당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⁹⁾).

①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 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생활S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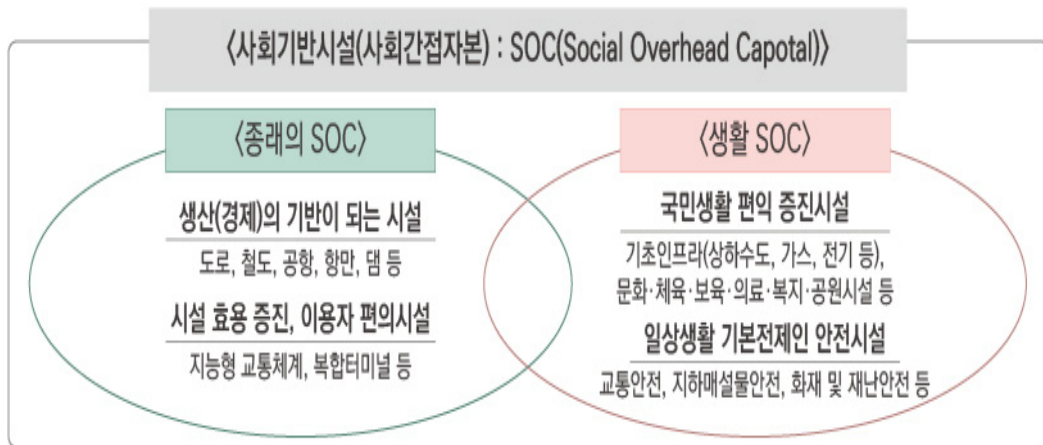
생활SOC는 종래의 사회기반시설에 더하여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하는 개념(관계합동부처, 2019a)이다. 보육, 의료, 시설,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국무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로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 포함된 복지 모델을 말한다.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검색일: 2021. 1. 14.)

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143&ancYd=20200331&ancNo=17148&efYd=20201001&nwj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2021. 1. 29.)

시설 범위는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시설인 ‘기초인프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문화, 체육, 보건, 의료, 복지, 공원시설’ 등과 일상생활의 기본전제인 안전시설로서 ‘교통안전, 지하매설물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을 포함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a,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p.1. 성은영 외(2021), p.17. 재인용

〈그림 2-16〉 생활SOC의 개념

□ 생활SOC와 유사한 정책 및 법적 용어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생활인프라)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 이 밖에 정책 및 사업 단위에 따라, 유사기능의 시설 용어로서 기반시설, 복리시설 등

〈표 2-17〉 생활SOC 관련 시설의 정의와 시설 분류

관련법률	구분		정의(종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생활SOC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생활인프라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 재생 기반시설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공간복지시설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과 공간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유원지,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		-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 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농업관련 시설 -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주택법 (제2조)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주택건설 기준 등에	주민공동시설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관련법률	구분	정의(종류)
관한 규정 (제2조)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의료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한방병원 및 약국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서비스 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집회시설, 관리 및 지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체육관, 운동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

자료: 오성훈 외(2020, pp.25-26), 성은영 외(2021), p.52 참고로 수정

(2) 생활SOC 3개년계획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¹⁰⁾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방침(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기재부, 2018)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인프라를 구축’을 목표로 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 안심 등 3대 분야의 8대 과제를 설정하고, 3개년 간 국비 총 30조 원(지방비 포함 48.3조원) 집중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사업으로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농산 어촌개발(농림부), 어촌뉴딜(해수부) 등 타 부처의 지역개발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시설 유형과 입지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 생활SOC 복합화사업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 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생활SOC 복합화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을 의미한다. 복합화 대상시설 13종 중 2개 이상(‘20년 사업은 9종 중 2개 이상) 포함하여 복합화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단일시설 시설의 국고 보조율 대비 10%p를 인상¹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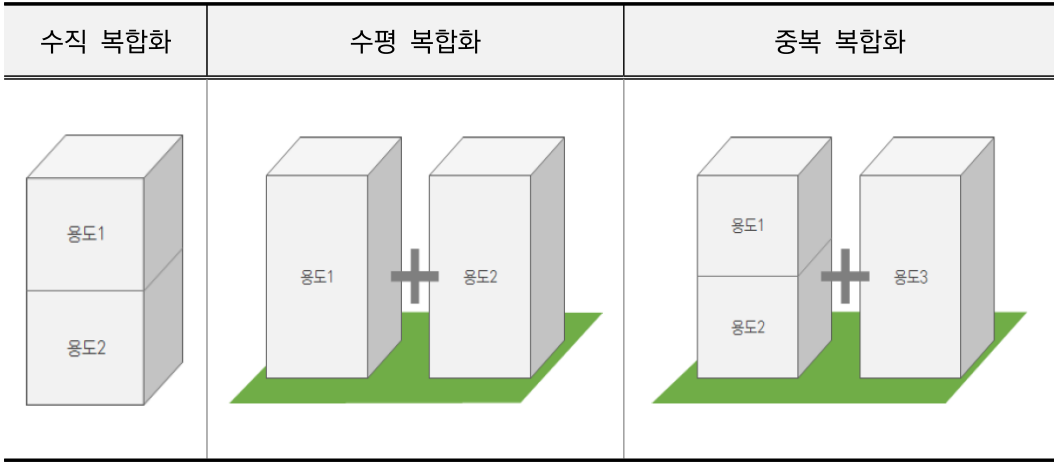
지난 3년간 복합화사업은 총 530건(20년 선정사업 289건, 21년 선정사업 149건, 22년 선정사업은 92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¹²⁾되었다.

10)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

11) 관계부처합동, 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p.7

12)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21), “3년의 노력,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네 생활SOC: 제3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2년 사업) 92건 확정”, 9월 30일 보도자료.

〈표 2-18〉 생활SOC 복합화의 형태



자료: 성은영 외, 2016,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p.25,
관계부처합동, 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p.9에서 재인용

2) 고령자 복합시설의 유형

□ 고령자 시설의 복합화는 고령자 시설의 질적 정비, 지역복지의 향상, 세대 간 교류의 촉진 등¹³⁾을 위해 추진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들과 다른 복지시설을 결합하여 복합화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설 공급의 수요 충족한다.

〈표 2-19〉 고령자 시설과 복합화하는 시설 유형

구분		내용
고령자 시설	거주계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료병상) 개호이용형경비노인홈(케어하우스) 유료노인홈, 실버하우징, 시니어주택 기타(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A형/B형, 고령자 대상 우량임대 주택)
	이용계	노인통소개호시설(노인데이스비스센터) 노인복지센터 특A형/A형/B형 개호지원시설(재가개호지원센터,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 헬퍼스테이션) 생활지원하우스(고령자생활복지센터) 기타(노인휴게의 집, 노인휴양홈, 노인단기입소시설, 재가복합형시설, 치매성노인 그룹홈, 실버인재센터 등)
기타 시설	거주계	사회복지시설 : 신체장애인 갱생원호시설 지적장애인 원호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관, 보육소 등) 기타(모자복지시설, 지역복지센터 등) 의료보건시설 : 보건시설(보건소, 보건센터) 건강증진시설(온수풀, 헬스센터), 일반병원, 일반진료소
	이용계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시설 : 공민관, 커뮤니티센터 공립문화시설 : 도서관, 학습시설(생애학습센터 등) 사회체육시설 : 옥내스포츠시설(체육관, 온수풀 등) 옥외스포츠시설(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등) 기타 : 점포, 시청, 구청, 사무소, 기타

자료 : 이상림·강은나·오신휘·전홍규·이한나·박소정·류승규(2016),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13) 이상림 외(2016), p.146.

□ 고령자 거주시설과 케어시설의 복합

고령자 거주시설과 편의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거주하면서 편의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 사가미하라시의 에스플라자빌딩의 경우 시니어 주택과 보육원, 노인데이서비스 센터, 상점과 진료소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화 하였다.

□ 고령자 이용시설과 케어시설의 복합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고령자 이용시설과 다른 복지서비스들을 결합함으로써 세대 및 지역교류를 도모한다. 일본 누마즈시 센본플라자의 경우, 노인복지센터, 재택개호지원센터, 세대교류지원센터를 결합하였다.

3) 새로운 시설 및 공급 사업 사례

(1) 늑내건강학교(2019) : 노인 건강을 위한 제3의 공간

□ 시흥시 보건소가 보건소 마당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사업 (8억원, 문화체육관광부)’으로 진행

지역 노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집과 복지관만 오가는 어르신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보건소 앞마당 유희공간에 부엌과 냉난방 공조기능을 갖춘 ‘다목적 가변공간’, 초록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사계절 온실공간’,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별별사진관’, 매일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등이 가능한 ‘순환형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하였다. 14)

냉난방이 되는 가변공간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체조교실,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계절과 관계없이 고령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료: 중앙일보, 2020,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노인들 살맛나는 핫플레이스 됐다, 1월 13일 기사

[그림 2-17] 늑내건강학교 공간구성

14) “어르신들! 늑내 건강학교로 놀러오세요!-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광장 공식 개장”, 시흥타임즈, 2019.11.17.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7862>

(2) 동작구-서울리츠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 세대융합형 행복주택

□ 30년 이상 된 구립 경로당 부지를 활용, 경로당 재건축과 함께 용적률 여유분을 청년공공주택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2020년, 연면적 345.01㎡, 4층 규모로 조성하였다. 1층에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구립 학수경로당, 2층~4층은 청년 보금자리인 청년 행복주택 7세대로 조성하였다.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2020년, 연면적 1,121㎡ 규모, 구립 약수경로당과 행복주택 25세대, 주차장(4면) 등으로 조성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자료 :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1>,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011100838001#c2b>

[그림 2-18] 경로당-청년주택 복합화사업

(3) 창동 아우르네(2021) : 세대융합형 창업지원공간¹⁵⁾

□ 서울시가 조성한 청년부터 노년까지 포괄하는 일자리 및 복지 지원 시설

다양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를 비롯 창업가·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시설 등 총 4개 시설을 조성하였다.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중장년 세대의 취·창업과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 창업가와

15) ‘중장년-청년 있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생긴다. 창동역세권 일대 취업·창업·일자리 창출 거점시설, ‘창동 아우르네’ (‘백뉴스, 2020-5-4),

예술가를 위한 공공주택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활동공간인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027년 개통 예정) C노선이 환승하는 창동역세권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7,744㎡ 규모로 조성되었다. 총 사업비 486억 원에 서울시가 376억 원, 국토교통부가 110억 원을 투입 하였다. 대학의 창업보육시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하여 쇠퇴한 구도심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창동역 일대는 물론 동북권 지역경제의 회복과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자료 : <http://www.100news.kr/7274>, <https://50plus.or.kr/detail.do?id=10329965>

[그림 2-19] 세대융합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

4) 공간복지 개념의 정책화와 확장

□ 복지 개념의 전환¹⁶⁾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로 선별적 복지¹⁷⁾에 치중하였다. 최근 정부는 경제적 수준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지향¹⁸⁾하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생활 SOC 3개년계획 등 공간과 시설 측면에서도 국민과 삶의 공간에 대한 공간복지 전략 마련하고 있다. 확충된 공간 및 시설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생활밀착형 복지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공간복지에 대한 논의¹⁹⁾

공간복지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오성훈 외, 2020, p.11)을 말한다. 공간복지 서비스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 생활환경 구성하며,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생활SOC, 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에서 공간복지 서비스의 영역은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간복지에 해당하는 공간시설은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보육, 문화, 체육, 의료, 공원 등 일부 영역으로 한정한다.

공간복지 서비스는 시설 투입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없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SW)도 공간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 성은영 외, 2022, p.13.

17) 복지는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와 급여 및 서비스 배분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다 (유근춘 외, 2011, p.20).

18) 포용적 복지의 중간성적표, 이봉주, 2019.5.17., 복지칼럼,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305&searchWrd=&srchKeyCode=&pageUnit=10&pageIndex=1&dataSid=6660880#none>

19) 성은영 외, 2022, p.17

공간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① (기본적 삶의 질 유지 향상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 생활환경 구성하며,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
- ② (기초부터 편익까지) 기초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기능부터 일상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
- ③ (필수서비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일정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
- ④ (분야) 의료,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및 기초인프라 등을 포함
(삶의 질) 생활서비스는 정주환경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
- ⑥ (공급주체)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

자료 성은영 외(2022), p.18.

(1) 공간복지 관련 법제화 시도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간복지 보장 요구

국가는 헌법 제34조에 의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지역사회 기반 복지공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풍요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²⁰⁾ 등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역주도의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단위의 시설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와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계획적 공급, 관리 필요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공간복지시설 및 공간의 문제는 상이하므로 효과적인 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 생활환경, 인구구성, 공간복지시설 현황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오성훈 외, 2020, p.18). 윤관석 국회의원 등이 「공간복지기본법²¹⁾」을 발의(2021.09.10.) 하였다.

20) 정부는 2019년 생활SOC3개년계획(‘20~’22)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복합화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보조율을 높이거나 학교시설 부지 활용, 도시공원 입지 규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정부지원의 계획체계의 본격적 시행해왔다.

21) (제안이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계층과 세대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공간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공간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들이 근거 법률과 계획, 소관 부처, 재원 등이 달라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여건 및 공급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간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공간복지시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재원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아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4. 시사점

- 충남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UN, WHO, 미국 등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에 동참하는 의미이며,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 계획에 부합하는 필수 추진 정책임

UN, WHO 등 국제기구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성과 사회·서비스 환경의 연계로 고령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지역 조성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일본, 주요 유럽국가는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고령친화도시·지역 조성의 방향설정과 지침을 개발하고, 광역·기초지자체는 고령사회 대응 현황 점검결과에 기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내 다수의 지자체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 및 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방향을 따르고 있다.

충남은 2020년 도 차원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공주시·논산시·서산시·부여군·예산군 역시 시·군 차원의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해당 조례들은 WHO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침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수립은 관할 기초지자체의 고령사회 대응 물리·사회·서비스 환경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천전략은 기존 노후 주거지와 신규 주거단지 개발의 경우로 구분하여 도와 시·군의 역할을 제시하고, 시·군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복지 연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기존 노후 주거지의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NORC와 신규 주거단지에 입주 가능한 중·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CCRC로 구분되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연계 요구에 대응하는 Aging in Place와 Aging in Community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주 정부는 NORC의 경우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NORC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 거주 고령자의 Aging in Place를 지원하며, 민간 사업자의 개발 중심 CCRC의 경우 중·고소득 입주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이용 담보를 위한 개발·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CCRC 모델은 Gated Community의 특성을 보이며 입주 고령자의 외부와 교류 단절, 사회참여 부족 한계를 나타내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집중된 인프라와 인적교류 능력과 연계하는 UBRC 모델을 개발·적용하였다.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천전략은 시·군 거주 고령자의 폭넓은 소득수준 차이와 주거환경 우선 개선 또는 사회참여 우선 지원의 요구 등을 확인하고, 기존 노후 주거지와 신규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 개별적 시설·장소의 개선과 함께 소규모 지구·구역 단위의 고령친화 주거·서비스 연계 조성을 고려할 필요

미국 뉴욕시의 Aging Improvement District 사업과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영국 런던시의 건강 뉴타운 조성 등은 고령자의 일상생활권 내에 위치한 시설·장소·공간의 고령친화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Aging Improvement District는 우리나라 행정동 규모 이하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1~2개 정도의 지구 규모로 계획한다.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은 고령자의 도보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규모 단위로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물리·사회·서비스 환경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연계 서비스를 통한 실효적 Aging in Community 구현 필요

미국 CCRC 모델은 건강한 상태의 초기 고령자가 주거단지에 입주한 이후 건강상태 변화(건강-허약-의존)에 따라 단지 내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주거로 이주하여 특정 건강상태에 가장 적합한 주거돌봄과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주거를 옮기더라도 같은 CCRC 단지 내에 여전히 거주하게 되어 Aging in Community를 동시에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충남의 고령친화도시·지역은 건강, 의존 등의 특정 건강상태를 보이는 고령자만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여 주거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건강상태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 제공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쇠하여 기존의 고령친화 주택·주거환경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남 내에 위치한 인근의 시·군의 다양한 고령친화 주택·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여 변화된 건강상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연속돌봄형 고령친화도시·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 설정 필요

현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와 수요의 기반을 마련한 고령사회 대응의 개념적 특성은 고령자만을 위한 생활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아동,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본인에게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수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정책사업 추진은 고령자만을 위한 생활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 내 아동, 청장년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 연령대의 도민이 충남 내에서 활기찬 사회활동과 건강한 일상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연령통합적 고령친화 방향의 충남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Age-friendly 충청남도’이자 ‘Aging in 충청남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3장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 : 가이드라인 책정을 중심으로

1. 접근방법

- 충청남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3가지 방법(대안)이 검토 가능함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중 물리적 환경조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남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대통합형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 융복합·통합을 위한 도시만들기 전략을 제안한다.

- 3가지 방법 중 ‘자체 가이드라인 신설’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내용적 구성은 중앙정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과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인간중심 도시디자인 정책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충남 민선8기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2020. 6. 10. 시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의 경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먼저 기존 도시개발 업무지침 중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매뉴얼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례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 증진 등 조화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과의 연계

□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볼 수 있음

제1편 총칙은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지정대상지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의 내용이다.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은 개발구역의 명칭, 개발계획의 구성, 시행방식, 기초 조사, 부문별 계획 등의 내용이다.

제3편 실시계획은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첨부도면 및 서류 등의 내용이다.

제4편 환지계획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 필요한 사항이다.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는 조성토지 공급, 공공시설 인수인계 관련 내용이다.

제6편 비용분담 등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부담의 주체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는 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지급 등의 내용이다.

제8편 행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 기준, 3년마다 재검토 시행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공간적 내용(외부공간, 교통수단, 주거환경)의 연계 여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제2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타 분야는 실행을 위한 방안 차원에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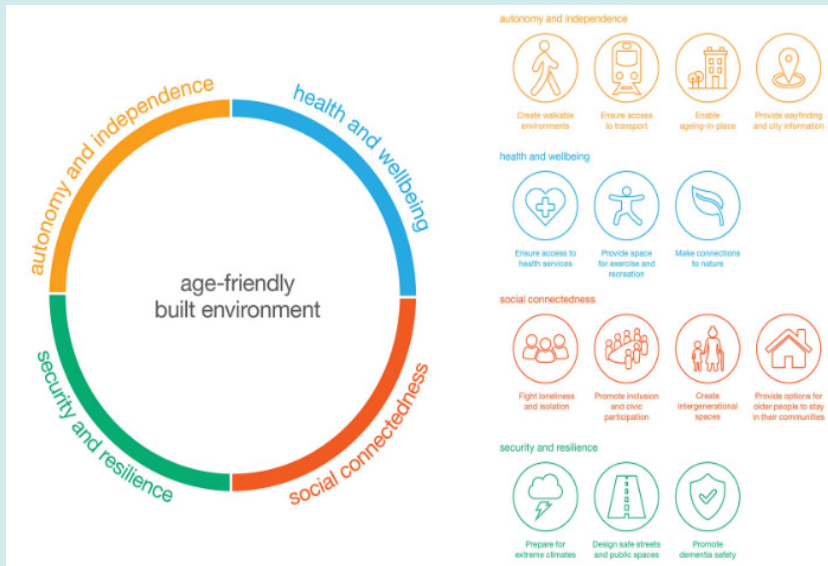
- 다음은 예시적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틀을 제안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려사항〉

- － 실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본 가이드라인 외에 WHO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가이드라인, 선행사례와 연구 등을 참조하여 고령친화도시 이념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활용함

〈예 시〉

1. 자율과 독립: 걷기 편한 환경 만들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공, 살던 집에서 노후 보내기, 길 찾기 및 도시정보 제공
2. 건강과 웰빙: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 자연과의 원활한 접근
3. 사회적 연계성: 고독과 소외에 대응, 포용과 공공 참여를 촉진, 세대 간 연결공간을 조성, 고령자가 과거부터 살아온 커뮤니티에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4. 안전과 복원력: 극단적 환경에 대비, 안전한 가로와 공공공간의 설계, 치매 환자의 안전을 촉진



* 자료: Roca Gallery. 2022.5.10. Rethinking Cities in an Age Friendly Way (<http://www.rocagallery.com/rethinking-cities-in-an-age-friendly-way>)

1) 총칙 ⇨ 가이드라인의 성격 명확화

□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조성지원조례」 등을 충남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임을 명확히 함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업무지침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충청남도’라는 용어를 명시하였고 지침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매뉴얼 성격의 ‘충청남도 고령 친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명명한다.

- ※ 업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같은 용어로 이해될 수 있어 개념설정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업무지침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표 3-1〉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편 총칙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목적 등 명확화(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전략..... 제1편 총 칙 제1장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1-2.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신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후략.....	후략.....

2) 부문별 계획(제8장)

(1) 목표 및 전략의 설정 ⇨ 고령친화 개념 도입 내용 보완

□ 목표 및 전략 설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정립과 작성 기준에 관련된 가이드로서 현재 내용을 유지하고 추가하는 것이 적절

□ (조정방향) 목표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반영된 목표로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목표를 구체화한다.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도시개발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표 3-2〉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2-8-1-2. 목표와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표 ①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전략..... 2-8-1-2. 목표와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표 ①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③ 목표와 전략에서 고령친화 개념과 가치가 명확히 제시되고, 주택공급 등 부문별 계획에서 실행력이 담보될 경우 기 확보된 인센티브에 추가하여 용적률 완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후략.....	좌동후략.....

(2) 주요지표의 설정 ⇨ ‘사회경제지표’ ‘시설지표’, ‘환경지표’ 내용 보완

- 주요지표는 사회경제지표, 시설지표, 환경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량적·단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안내
- (조정방향) 사회경제지표 중 ‘인구구조 설정’ 내용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 검토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방향설정 단계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의 필요성을 주지

〈표 3-3〉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전략.....
2-8-2-2. 주요 지표는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좌동
(1) 사회경제지표	
①	
②	
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좌동
(2) 시설지표	(2) 시설지표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수요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생활SOC)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특히, 고령친화 관점에서 고령자 관련 생활SOC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한다.
②	좌동
(3) 환경지표	③ 제공되는 주요 기반시설은 고령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추가)
①	좌동
②	
	③ 고령인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 악취 등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추가)
.....후략.....	후략.....

□ 시설지표에서는 주요기반시설을 노령인구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요구

□ 환경지표에서는 소음, 악취 등 환경위해요소가 없는 공공공간이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

(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 ‘고령자 주동선 사항 등’ 내용 보완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앞서 진행한 현황분석, 목표, 전략, 주요지표 등과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 (조정방향) 개발구역 내 공간구성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고령친화 공간 및 시설을 우선한다는 내용은 추가

〈표 3-4〉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③ 후략.....	전략..... 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 및 이를 원활히 연결한 동선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좌동 후략.....

(4) 인구수용계획 ⇨ ‘수립기준’ 내용 보완

□ 개발구역에 향후 정주할 인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 제시

□ (조정방향) 수립기준 중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내용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이동성을 고려한 동선 체계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조성이 가능하도록 유도

〈표 3-5〉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4절. 인구수용계획’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① 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 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 후략.....	전략..... 작동 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 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고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가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후략.....

〈보행 장애물 없는 보행로 조성 사례〉

- 보행 장애물을 없애고 턱을 낮춰 사회적 약자 보행의 편의성 제고
-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휠체어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
- 보도 경사를 제한



자료: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38461&picno=92882&ected>

□ (조정방향) 주택계획 중 개발구역 내 주택용지의 배분 및 공동주택 면적별 용지배분에 관한 내용에 고령친화주택 내용을 포함

〈표 3-6〉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4절. 인구수용계획' 중 주택계획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전략.....
..... (4)주택계획	
①	좌동
②	
③	④ 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령친화 주택용 주거용지 공급 확대와 고령자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및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대상지의 일부를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고령자 주택 관리주체는 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고령자주택,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국가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통해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충남도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시에는 용적률, 임대 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후략.....	후략.....
.....	

〈고령자복지용 임대주택 공급과 편의시설 복합화 사례〉

- [목적]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 복지시설을 복합해 제공
 - [주요내용] 1~2층부는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상층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옥상 부분은 텃밭으로 제공
 -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한 공공임대주택
-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진행 예정
- [고려점]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의 읍면지역에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 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 필요성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2021.12.31. 보도자료, 고령자복지주택·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 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

〈고령자 주택 공급 및 관련시설 복합화 사례 :일본의 콜렉티브 하우스 칸칸모리 사례〉

- 거주자의 속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서비스 시설이나 고령자 서비스를 포함한 세대융합 복지 시설을 공급함
 - 일본의 집합주택(콜렉티브 하우스) 「칸칸모리」는 도쿄도 아라카와(荒川)구 닛포리(日暮里)에 있음
 - 2003년 6월 준공되었으며 28호가 거주하고 있음
 - 12층짜리 빌딩 「닛포리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나이의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에 살면서 식당과 현관 등은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여러 가구가 공동의 생활공간에서 가사를 돕는 스타일로 운영
 - 입주민의 생활 수준은 도쿄 전체에서 중상층에 속함
 - 집합주택은 2층, 3층 부분에 있고 4층부터 12층까지는 고령자 시설, 1층에는 인증 보육원이 있음
- 친구를 만들어 노후를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노인 계층, 아동을 편하게 맡기고 맞벌이 부부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



- 다목적 홀 : 커먼 다이닝
- 공동부엌(커먼 키친)
- 공유정원 : 채소밭
- 공유 테라스
- 아동놀이공간 : 키즈 스페이스
- 세탁실, 게스트 룸 등

자료: <https://chc.or.jp/chcproject/kankan.html>, <https://www.collectivehouse.co.jp/kankanmori/life.html#commonsplace>

(5) 토지이용계획 ⇨ 현행 유지

- 개발사업의 미래상을 고려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별 용지배분에 관한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합

(6) 교통처리계획 ⇨ ‘특수(특화)가로계획’ 내용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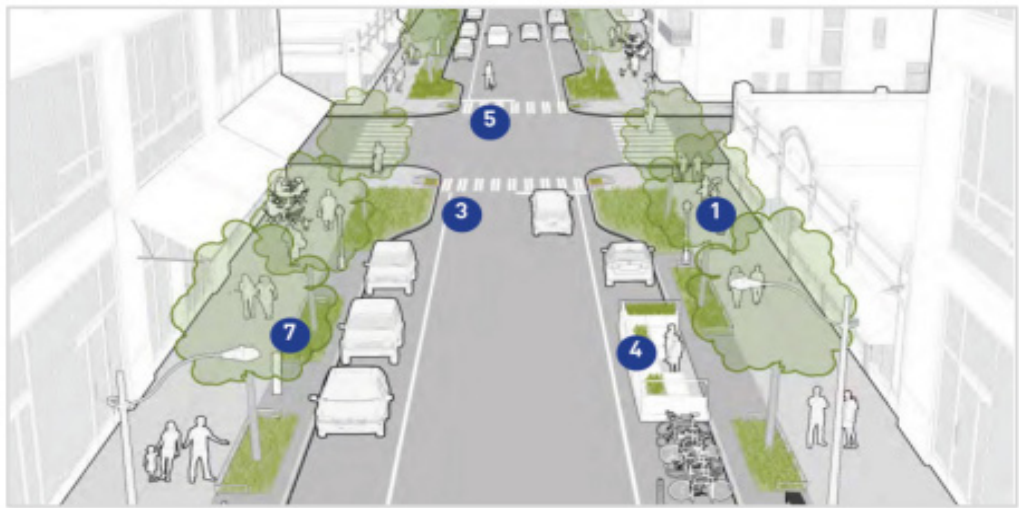
- 개발구역 내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가로망 계획,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조정방향) 특수가로계획 중 ‘보행자전용도로’내용을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고령자의 지역 내 이동 편의성 증진

〈표 3-7〉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6절. 교통처리계획’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제6절 교통처리계획 2-8-6-3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주차장계획 (4) 특수가로계획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전략..... (4) 특수가로계획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노인이 이동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친화 인프라를 연결하여 배치토록 유도하고 접근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령자의 여가, 문화 활동, 사회참여 등의 외부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
② ③후략..... .	② ③후략..... .

〈미국 시애틀시의 고령 친화 근린 가로 설계기준〉

- 미국 시애틀시 교통과(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근린과(Department of Neighborhood)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교통수단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교통수단과 가로를 제공토록 하는 가로 설계기준을 제시
- 도로 양측에 가로수 식재,
- 보도폭원 확대,
- 보도에 휴식공간 배치
- 교차로에 회전반경이 짧은 연석(curb) 배치로 차량 감속 유도,
- 노상주차 허용,
- 보행자의 쾌적성 제고



자료 : City of Seattle. Office of the Mayor, 2018. Age Friendly Seattle Action Plan 2018-2021
(<http://www.seattle.gov/documents/Departments/AgeFriendly/AgeFriendlySeattleACTIONPlan2018-2021.pdf>)

(7) 환경보전계획 ⇨ 현행 유지

-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전대상 선정, 공원녹지체계 수립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내용 중에는 공원녹지체계 부분이 고령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이 있으나, 현재도 고령자를 배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8) 환경성 검토 ⇨ 현행 유지

-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9) 방재계획 ⇨ 현행 유지

- 방재계획은 개발구역 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재 시설 설치 계획이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

(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현행 유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11) 기반시설계획 ⇨ ‘주차장’ 내용 보완

- 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고령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 고려사항 중 고령자 관련 내용(2-8-11-3), (4)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개별 기반시설(주차장, 문화시설, 도서관, 보건의료시설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침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

교통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고령자의
 지역 내 이동 편의성 증진한다.

〈표 3-8〉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1절 ‘기반시설계획’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전략.....
....	
제11절 기반시설계획	제11절 기반시설계획
2-8-11-4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8-11-4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도로	(1) 도로
(2) 주차장	(2) 주차장
①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①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업대상지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내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선을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노란색으로 주차선을 그리고 안에는 ‘어르신 우선 주차’라는 글씨를 써 놓고 일반주차공간과 같은 크기로 설치한다
.....후략.....	후략.....
....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의 적용확대〉

- 여성전용주차장이나 임산부 전용주차장처럼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
- 도시개발사업대상지 내 공공시설과 가용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국공립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권고
-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안내판도 설치

■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주차구역 안내 표지
	

■ 고령 운전자 표식 (배부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주차구역 안내 표지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배려-양보

자료: 노컷뉴스, 2021.2.1. 15:16. '고령친화도시'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178면 설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492320>)

□ 기반시설 중 ‘(新) 복지시설 및 고령자편의시설’ 추가함.

즉, 지자체장은 사업대상지내에서 노인이 복지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표 3-9〉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전략.....
....	
(3)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3)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4)문화시설·도서관·보건의료시설·보육시설	(4)문화시설·도서관·보건의료시설·보육시설·노인 복지시설·노인편의시설
	(5)지자체장은 사업대상지내에서 노인이 복지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좌동
.....후략.....	후략.....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57호, 2020. 1. 9., 일부개정]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반시설 중 ‘(新) 공원시설’에 대해 고령친화 또는 세대융합 개념의 공원조성을 유도함

〈표 3-10〉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전략..... (6) 자체단체장은 사업대상지내에서 공원녹지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근린공원 등에 대해 고령 친화형 공원조성 또는 어린이,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유도 한다.
.....후략.....	좌동후략.....

〈공주시, 공주형 어르신 특화사업 추진〉

- 공주시는 공주형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신바람 공주'를 비전으로 2019년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 3년 동안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 과제 발굴과 정책수립 모니터링, 고령친화도시 조성 개선사항 제시, 시민 홍보 활동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시민참여단도 위촉하고 활동
- 전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관내 모든 경로당 점심 무료 급식 등 공주형 어르신 특화사업도 본격 추진



자료 : 충남일보. 2021.01.20. 15:18. 공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정책 수립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400>

〈고령자 맞춤형 놀이공간 조성〉

- 고령자들이 재미있으면서 신체활동과 두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고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연령층보다 피해가 심각하므로 옥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자료 : PDPlay. 2016.1.4. the Rise of The Playgrounds For Senior Citizens

(<https://pdplay.com/rise-playgrounds-senior-citizens/>);

Designing Play Spaces for Older Adults (aucklanddesignmanual.co.nz/design-subjects/universal_design)

(12) 문화재보호계획 ⇨ 현행 유지

- 개발구역 내 분포하는 문화재 보존방안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는 부분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13)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계획 등 ⇨ 현행 유지

-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내용(위치, 부지면적, 설치비용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14) 토지의 수용·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 ⇨ 현행 유지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15)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 현행 유지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16) 사업성 및 개발효과 검토 ⇨ 현행 유지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3) 주요 개정사항 종합검토 및 정리

-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시 고령친화도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인구구조 설정(지표설정), 생활권 조성(인구계획), 보행 공간 조성(교통계획) 등 주로 외부공간에서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고령친화도시의 주택 관련 내용은 현재의 도시개발업무지침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표 3-11〉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지침 개정 부문] 주요내용	필수항목	선택항목	비고
[목표 및 전략설정] 제1편 총 칙 제1장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1-1-2.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신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2-8-1-2. 목표와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표 ①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③ 목표와 전략에서 고령친화 개념과 가치가 명확히 제시되고, 주택공급 등 부문별 계획에서 실행력이 담보될 경우 기 확보된 인센티브에 추가하여 용적을 완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지침 개정 부문] 주요내용	필수항목	선택항목	비고
[주요지표의 설정] (1) 사회경제지표 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다.	○		
(2) 시설지표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생활SOC)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특히, 고령친화 관점에서 고령자 관련 생활SOC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한다.	○		
③ 제공되는 주요 기반시설은 고령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추가)	○		
(3) 환경지표 ③ 고령인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 악취 등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추가)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 및 이를 원활히 연결한 동선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	○		

[인구수용계획] 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① 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고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가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4)주택계획 ① ② ③ ④ 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령친화주택용 주거용지 공급 확대와 고령자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및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대상지의 일부를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고령자 주택 관리주체는 주택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고령자주택,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통해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충남도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시에는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	
[교통처리계획] 2-8-6-3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주차장계획 (4) 특수가로계획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노인이 이동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친화 인프라를 연결하여 배치토록 유도하고 접근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령자의 여가, 문화 활동, 사회참여 등의 외부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	○		

[기반시설계획] 제11절 기반시설계획 2-8-11-4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도로 (2) 주차장 ① 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업대상지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내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선을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한다.		○	
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노란색으로 주차선을 그리고 안에는 ‘어르신 우선 주차’라는 글씨를 써 놓고 일반 주차공간과 같은 크기로 설치한다		○	
(3)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4)문화시설·도서관·보건의료시설·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편의시설 (5)지자체장은 사업대상지내에서 노인이 복지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자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		
(6) 자체단체장은 사업대상지내에서 공원녹지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근린공원 등에 대해 고령친화형 공원조성 또는 어린이,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		

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1) 총 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분야 별로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부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갈등 없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리는 의미로,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고령자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령친화도시”란 다양한 도시 환경 변화에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물리적 도시 환경조성과 사회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말한다.

③ “기반시설”이란 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④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⑤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 또는 인가하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지 않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고령인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시행령에 정의된 고령친화도시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아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방향

□ 제4조(계획수립의 기본방향)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기반시설과 외부환경 등이 연계된 최적의 고령친화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외부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기법 반영,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증진, 주거환경 안전성 적용 등

2. 사회적 서비스로 고령자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및 여가사회 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교육, 건강 및 지역돌봄 등 프로그램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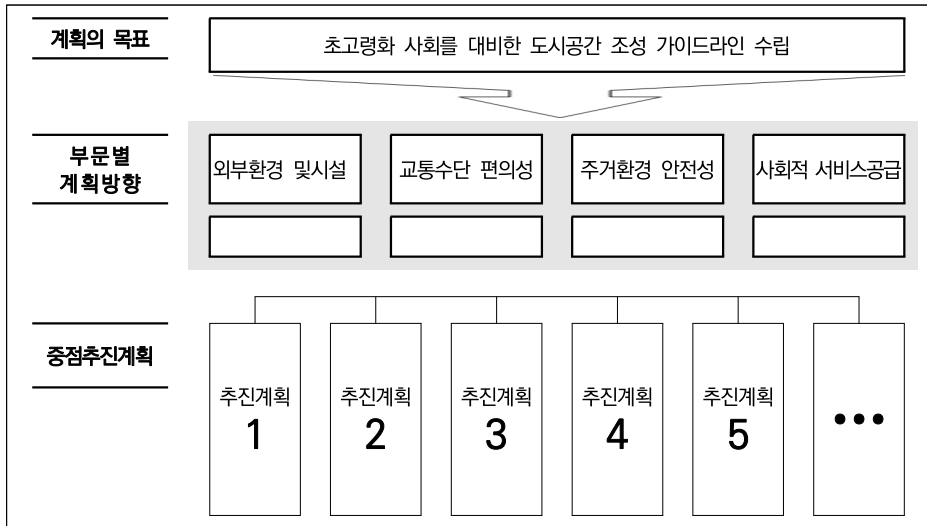
②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적 환경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 서비스 부분에 한하여 주변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절차

- 제5조(계획수립 시기)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수행 절차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의 2단계로 진행되며, 고령친화도시 계획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고(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공통),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행정절차에 포함토록 한다.
- 제6조(기초조사) 사업시행자는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 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주변지역 및 거점도시의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지역여건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고령 인구의 변동과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 제7조(영향권 검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계획수립 개요 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을 도출한다.
 - ②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된 도시환경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지표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다.
 - ③ 고령친화도시 계획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사업완료 후 도시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확산 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부문별 계획 수립) ① 고령친화도시 계획은 사업계획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의 목표, 부문별 계획방향, 중점 추진계획 등 세부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고령친화도시 계획은 고령자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하여 [별표] 규정에 따른 부문별 검토기준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예시)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4) 제4장 부문별 계획

(1)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 제10조(개요) ① 고령친화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계획은 외부환경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을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하며, 기반시설에 반영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은 별표1 규정에 따른 필수항목은 반드시 반영하고, 선택항목은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문화복지시설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상 용지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용지 매입 등의 의사 등을 검토 후 계획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제11조(외부환경 및 시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공원, 녹지, 휴게공간 등 공공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령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물 설치계획 등 외부환경에 대한 고령친화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고령친화도시 개념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령친화시설을 정의하고, 각 시설의 입지계획을 통한 접근성 증진방안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고령친화시설은 고령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 커뮤니티 센터 등)과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사업구역 내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고령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공원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원 내에는 휴식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존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하여야 하며, 고령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원 계획 시, 고령자가 출입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고령자를 위한 위생시설(화장실), 인지성이 반영된 안내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공원녹지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교통수단 편의성) ① 사업시행자는 고령자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교통 시설물(버스정류장, 주차장, 횡단보도 등) 및 교통수단(버스, 택시, 개인아동시설)의 설계 방법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 차도와 보도가 완전 분리된 형태로 계획하며, 입체횡단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 등) 설치를 통하여 보행연속성을 확보한다.

2. 보도 : 주요 시설물 간 단절이 없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공간 일정거리에 고령자를 위한 앉음의자 등 휴게공간을 확보하며,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단차 또는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도로 횡단시설은 보행로와 단차를 제거하고, 경고시설, 바닥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차장 : 고령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주차장 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주차장 내 고령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설로 버스정류장, 택시 승하차장은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승하차 환경 증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스마트 버스 쉼터)의 적용을 고려한다.

□ 제13조(주거환경 안전성) ① 사업시행자는 고령자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안전장치, 안내시설, 공공복지 시설 등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설계방법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거시설은 접근을 위한 외부공간과 생활을 위한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외부 공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출입구 형태, 단차제거, 유효 폭, 바닥마감, 손잡이 등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의 생활편의성 증진을 위한 출입문과 손잡이 형태,

활동공간으로 출입문과 복도 유효폭, 위생시설(화장실)의 규모와 안전손잡이, 긴급 호출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2)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

- 제14조(개요) ①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은 인적자원 활용 및 여가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교육, 건강 및 지역돌봄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별표 2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고령친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정부 지원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 ③ 해당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개발계획에 반영된 고령 친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극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적자원 및 활용 및 여가사회활동) 고령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6조(존중 및 사회통합) 고령자가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이 차별과 무시, 고령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7조(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행사 및 구성원과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 기술 정보의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8조(건강 및 지역돌봄) 충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과 자원봉사자 확보를 통한 방문 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개발계획 심의

- 제19조(심의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은 ‘도시개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함께 심의한다.
- 제20조(심의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고령친화 도시 조성계획이 포함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간사는 별표의 고령친화 도시 조성계획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도시개발계획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변여건 등의 영향권을 검토한 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내용 반영) 사업시행자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실시계획 수립

- 제22조(실시계획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규정 및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중 개략설계도에는 고령친화 조성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구체적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고령친화 도시 조성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개별 사업시행자가 구속력 있게 추진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가이드라인의 기한) 이 가이드라인이 관계 법령, 지침의 폐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다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폐지 및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접수된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충청남도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가이드라인(안)

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서로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세대통합을 추구하며,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분야별로 여러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부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세대통합”이란 고령자와 더불어 전 세대가 갈등 없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리는 의미로,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세대별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세대통합 맞춤형도시”란 다양한 도시 환경 변화에 여러 다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각종 물리적 도시 환경조성과 사회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말한다.
- ③ “기반시설”이란 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④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 ⑤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 또는 인가하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내용 중 세대통합 맞춤형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②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지 않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에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③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고령인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시행령에 정의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 및 관련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아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수립 방향

- 제4조(계획수립의 기본방향)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기반시설과 외부환경 등이 연계된 최적의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세대통합 맞춤형도시의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외부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기법 반영,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증진, 주거환경 안전성 적용 등
 2. 사회적 서비스로 노약자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및 여가사회 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교육, 건강 및 지역돌봄 등 프로그램 개발 등
- ②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적 환경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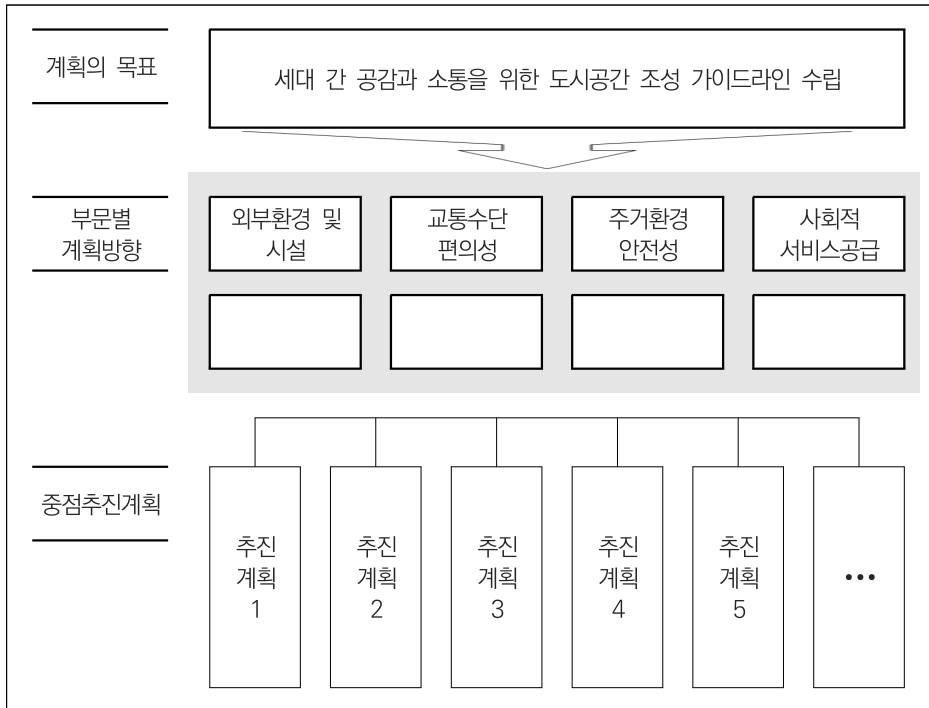
- ③ 도시개발 구역지정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 서비스 부분에 한하여 주변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수립 절차

- 제5조(계획수립 시기)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수행 절차는 도시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의 2단계로 진행되며,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고(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공통),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행정절차에 포함토록 한다.
- 제6조(기초조사) 사업시행자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 수립 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주변지역 및 거점도시의 인구·주거·교통·문화·복지·의료·교육·공원 및 녹지 등 지역여건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고령 인구의 변동과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 제7조(영향권 검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계획수립 개요 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을 도출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된 도시환경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지표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다.
③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사업완료 후 도시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확산 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부문별 계획 수립) ①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은 사업계획 목표에 부합 되도록 계획의 목표, 부문별 계획방향, 중점 추진계획 등 세부 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②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은 노약자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하여 별표 규정에 따른 부문별 검토 기준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부문별 계획

(1)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 제10조(개요) ①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계획은 외부환경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을 구분하여 복합적으로 검토하며, 기반시설에 반영 가능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은 별표1 규정에 따른 필수항목은 반드시 반영하고, 선택 항목은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문화복지시설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상 용지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용지 매입 등의 의사 등을 검토 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외부환경 및 시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공원, 녹지, 휴게공간 등 공공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물 설치계획 등 외부환경에 대한 세대통합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개념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대통합시설을 정의하고, 각 시설의 입지계획을 통한 접근성 증진방안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세대통합시설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커뮤니티 센터 등)과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사업구역 내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노약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공원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원 내에는 휴식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존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하여야 하며, 노약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원 계획 시, 노약자가 출입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보도, 노약자를 위한 위생시설(화장실), 인지성이 반영된 안내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공원녹지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교통수단 편의성) ① 사업시행자는 노약자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교통 시설물(버스정류장, 주차장, 횡단보도 등) 및 교통수단(버스, 택시, 개인이동 시설)의 설계 방법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 차도와 보도가 완전 분리된 형태로 계획하며, 입체횡단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 등) 설치를 통하여 보행연속성을 확보한다.

2. 보도 : 주요 시설물 간 단절이 없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공간 일정거리에 고령자를 위한 앉음의자 등 휴게공간을 확보하며,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단차 또는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특히, 도로 횡단시설은 보행로와 단차를 제거하고, 경고시설, 바닥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차장 : 노약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주차장 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주차장 내 노약자(고령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설로 버스정류장, 택시 승하차장은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승하차 환경 증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스마트 버스 쉼터)의 적용을 고려한다.

□ 제13조(주거환경 안전성) ① 사업시행자는 노약자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안전장치, 안내시설, 공공복지 시설 등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설계방법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거시설은 접근을 위한 외부공간과 생활을 위한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외부 공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출입구 형태, 단차제거, 유효 폭, 바닥마감, 손잡이 등을 적용하고, 내부공간의 생활편의성 증진을 위한 출입문과 손잡이 형태,

활동공간으로 출입문과 복도 유효폭, 위생시설(화장실)의 규모와 안전손잡이, 긴급 호출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2)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

- 제14조(개요) ①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은 인적자원 활용 및 여가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교육, 건강 및 지역돌봄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별표 2를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이후 정부 지원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 ③ 해당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개발계획에 반영된 세대 통합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극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적자원 및 활용 및 여가사회활동) 노약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6조(존중 및 사회통합) 노약자가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이 차별과 무시, 노약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7조(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행사 및 구성원과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 기술 정보의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18조(건강 및 지역돌봄) 충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과 자원봉사자 확보를 통한 방문 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개발계획 심의

- 제19조(심의기구)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은 ‘도시개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한다.
- 제20조(심의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이 포함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간사는 별표의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도시개발계획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변여건 등의 영향권을 검토한 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내용 반영) 사업시행자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실시계획 수립

- 제22조(실시계획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규정 및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중 개략설계도에는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구체적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조성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개별 사업시행자가 구속력 있게 추진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시범지구(공주 송선동현지구, 계룡 하대실2지구) 사업 적용 이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5.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

- 충남 15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령친화 및 세대융합·통합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3가지임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중 물리적 환경조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남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조성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세대통합형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충남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 융복합·통합을 위한 도시만들기 전략을 제안한다.

- 3가지 가이드라인은 도시지역 내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요타겟과 제도적 근거 등은 차이가 있음
- 이에, 최종적으로는 선진사례와 정책동향, 충남도의 정책방향 등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요구되며, ‘충남 세대통합형 맞춤형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할 경우 조례 등 실천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요구됨

〈표 3-12〉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개정 주요내용

실행전략 (가이드라인 대안)	적용지역(사업)	주요 타겟	제도적 근거
A.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보완한 가이드라인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일반특성 + 고령자	도시개발법
B.충남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고령자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C.충남 세대통합형 맞춤형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고령자 + 일반	없음 (지침운영을 통한 탄력적 적용)

제4장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시설공급을 중심으로

1. 기본방향²²⁾

□ (시설 공급)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적정 공급

지역 및 주민계층 간 공간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간복지 서비스의 포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은 확충하여 적정수준의 공급을 검토한다.

신규시설은 공간복지 시설별 및 기능별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의 시설 수와 입지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공간 활용)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및 재배치

공간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한다. 공간복지 공급 및 수요 현황을 진단하여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의 재배치 기본원칙을 세우고 시설 운영 효율성이 미비한 지역에 대안을 제시한다.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리모델링, 장래 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유휴 시설 활용 등을 고려한다.

□ (네트워크)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공간복지 서비스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교통 및 대체 시설 수단을 마련하고 거점시설 입지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22) 성은영 외(2022), p.270.을 토대로 수정·보완

□ (거버넌스) 지역사회 참여와 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공간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개인의 활동과 역량 강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교류, 소통 증대를 도모한다.

공간복지 시설이 지역사회 참여와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한다.

2. 접근방법

□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공급 필요 시설과 서비스 도출

(현황) 기성시가지의 정비 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관련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시설의 공급을 판단하므로 도시 내 전반적인 수요와 과부족 현황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설치 및 작성 기준은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준용 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5-1. 정비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 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5-2. 각 시설의 설치계획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전체적인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5.6.01 2차 개정)

제3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3-3-1.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3-3-2.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설에 대한 수요,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 공공자산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3-3.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3-3-4.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한다.

3-3-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은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대상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3-3-6.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 계획을 작성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에 당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3-7.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선) 생활SOC 등의 시설 공급 타당성 및 부담가능성을 고려시 도시 내 전반에 대한 시설 공급 분석이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기성시까지 정비 및 개발시 적용가능한 지차제의 자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 및 공간구조,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시설현황분석을 통해 시설의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이용 및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용자 수요 및 트렌드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장래 수요·트렌드를 예측한다. 필요시설 도출 단계에서는 기존 시설의 유희 및 이용불만족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황 및 수요 분석결과에 따른 필요시설과 서비스를 도출한다.



자료: 성은영 외(2022), p.293. 재수정 편집

〈그림 4-1〉 공간복지 관련 시설 현황 분석

〈표 4-1〉 필요시설 도출 및 전략 설정 과정 사례

구분	미국 퍼리아시	캐나다 브랜던시
현황 분석	- 인구, 지역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커뮤니티 수요, 커뮤니티시설 관련 트렌드 조사 - 커뮤니티 시설 프로그램 분석 및 서비스 전달 수준 분석 - 자원 및 재정 현황 분석	- 재정 현황 분석 - 지역 내 여가 및 커뮤니티 시설 현황조사 -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트렌드,수요분석
전략 설정	계획 제안 및 우선순위 실행계획 도출	- 여가 및 커뮤니티 시설 관리 비전 제시 - 전략적 계획 방향 및 우선순위 과제 도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단/중/장기 실행계획 및 주요내용 제시	기존시설 개선 및 향후 계획 제시 (단/중/장기 실행계획 및 예산계획 등)
구분	일본 야치요시	뉴질랜드 마나와투
현황 분석	공공시설 등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예측 (※ 「야치요시 공공시설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이용자 수요,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LoS) 분석 - 시설조성 현황, 재정 현황 분석
전략 설정	- 공공시설 등의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 방침 - 시설 유형별 자산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시설군별 위험요소 및 조치계획 제시 - 재정계획 및 기본방향 설정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생활권·시설별 향후 관리계획 수립 (※ 「야치요시 공공시설 등 개별시설계획」 별도 수립)	시설군별 세부계획 수립 (세부 시설별 생애주기 계획 등 포함)

자료: 성은영 외(2022), p.113.

□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유형 설정

□ (현황) 고령자 시설과 복합적 활용이 필요한 시설의 범위와 해당 시설의 공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자체 자체적인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개선) 국비 사업 추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어울림 플랫폼 공급 및 생활SOC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자체 자체 가이드 및 사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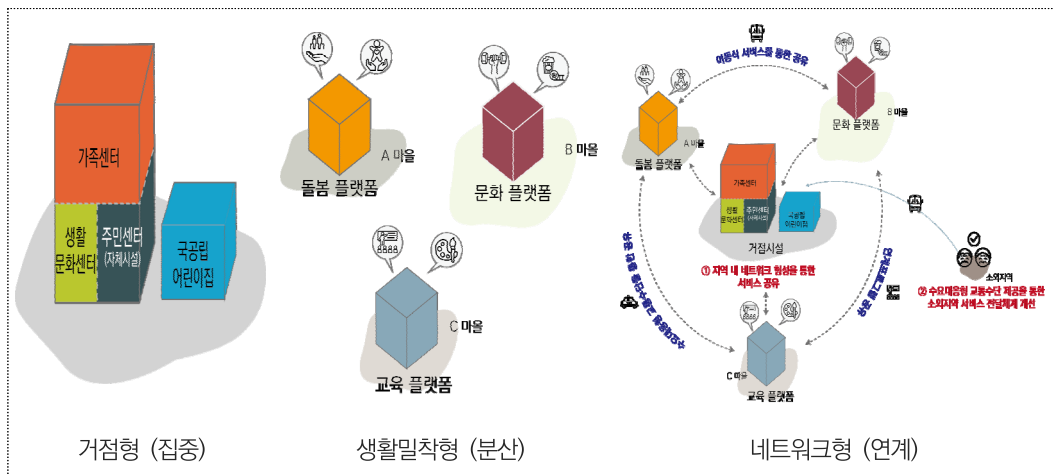
1) 공급유형 검토²³⁾

- 거점형 : 생활권 전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문화·체육·돌봄 등 생활SOC 서비스의 중심 거점기능 수행(다기능 허브시설)
- 생활밀착형 : 도보 생활권(마을 단위)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지역 여건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소규모 복합화)
- 네트워크형 : 거점 플랫폼 중심으로 생활형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정보·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이동식 혹은 수요대응형 서비스로 공유(거점형+생활밀착형)

〈표 4-2〉 생활밀착형 특화플랫폼(예시)

세부유형	서비스 내용	시설 구성 예시
문화	문화/스포츠 및 커뮤니티 공간	근린형 체육센터, 작은미술관, 체력단련장 등
돌봄	어린이, 노인 등 마을단위 돌봄	온종일돌봄,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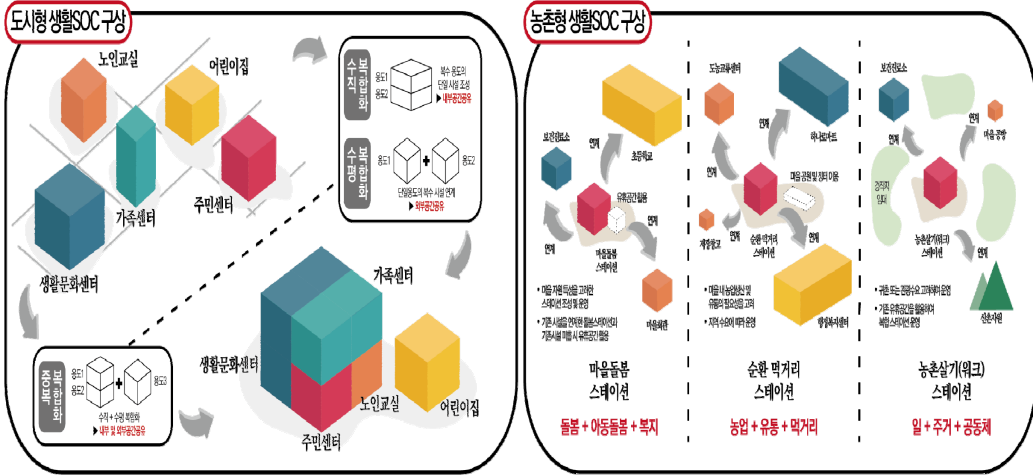
자료 : 성은영 외(2021), p.297.



자료 : 성은영 외(2021), 생활SOC 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발전방안 연구, p.298.

〈그림 4-2〉 복합시설 공급 유형 개념도

23) 성은영 외(2021), pp.297~298.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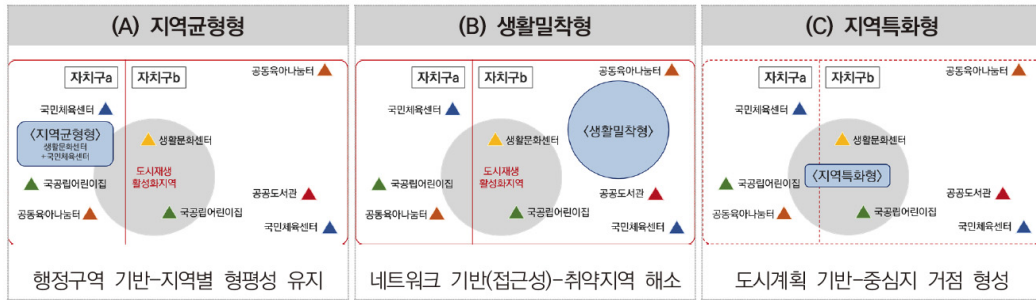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p.10의 그림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4-3〉 생활SOC 복합화방안 제안 예시

2) 자체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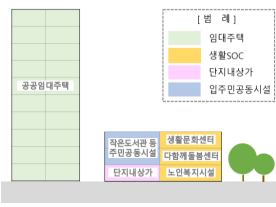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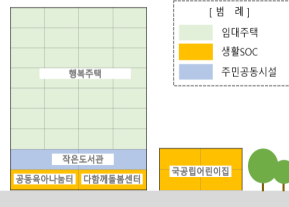
□ 공공 및 민관협력을 통해 공급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반영



자료: 민승현 이슬이(2021), p.20., 성은영 외(2021), n분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전략 연구, p.56. 재인용

〈그림 4-4〉 서울형 생활SOC 사업모델 예시

〈표 4-3〉 공공임대주택+생활SOC복합화 시범사업 예시

구 분	과천시	평택시	전주시
사업 명칭	행복 더불어센터 복합화사업	늘참 돌봄센터 복합화사업	행복 씨앗센터 복합화사업
사업 위치	과천지식정보S10 유형통합 610호	평택소사벌A-7 행복 357호	전주덕진 행복 130호
복합화 유형			
	임대주택+생활SOC 수평복합	임대주택+생활SOC 중복복합	임대주택+생활SOC 수직복합
사업 면적	960㎡(연면적1,800㎡)	550㎡(연면적800㎡)	400㎡(연면적 400㎡)
생활 SOC 시설	- 생활문화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노인복지센터(자체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 다함께돌봄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 다함께돌봄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자료 : 성은영 외(2021),p.75. 수정

□ 시설 적정 입지 선정 및 시설 공급계획 수립

(현황)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읍지역과 면지역 등 각 지역에 따라 공간복지 서비스 수준은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 계획 및 사업에서 시설의 공급 여부 판단이나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지침은 매우 선언적이며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은 시간거리로 기준 설정되어 있고 실제 시설 공급 판단 시 필요한 고려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과 가이드를 통해서 도시 유형별, 시설별 사례를 제공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절한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별표 2.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시 고려사항

1.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의 수립

-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밀도 및 공급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전략계획/활성화계획에 포함)

2.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인구밀도

- 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都市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시설 수용능력(용량)도 고려
- ②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都市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 ③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 개선 노력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 용량	최소거리 + 용량 + 유희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 전달체계

▶ 입지조건

- ① 지역의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하고, 공급대상 시설이 거점시설인지 마을단위 시설인지를 고려하여 공급
- ②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유희시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유희시설이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 ③ 신규 공급시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복합화)을 기본으로 하여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 ④ 인구저밀지역의 경우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 공급

▶ 시설의 규모

- ① 인구 당 면적,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의 기준에 맞도록 계획 수립
- ② 설립조성, 운영비(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연간소요 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

3.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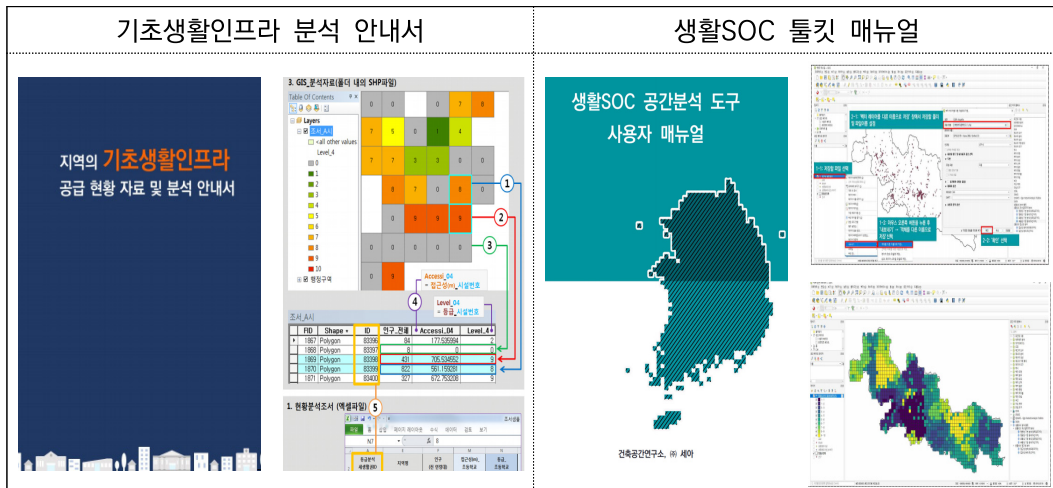
- ▶ 운영관리는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을 활용하되, 주민중심의 운영조직,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의 육성을 위해 노력
- ▶ 운영비용은 지자체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 징수, 수익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마련 노력

□ (개선) 기성시가지의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시 활용 가능한 시설 적정 입지 선정 및 시설 공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별도 마련

① 기존 국가사업 추진시 구축된 자료와 분석 툴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자체 가이드 마련

(기초생활인프라 분석 안내서) 국토교통부가 2019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분석 조서」의 격자 단위 접근성 현황 분석 자료를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조화·시각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생활SOC 분석도구 활용)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2020년 개발·배포한 생활SOC 분석 도구(툴킷)와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 QGIS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생활SOC서비스현황 및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료: (좌) 국토교통부(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우)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21), 생활SOC 공간분석 도구 사용자 매뉴얼

〈그림 4-5〉 적정 공급 입지 선택을 위한 자료와 분석 툴 예시

② 지자체 단위로 별도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마련

사업단위로 시설이 공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시설 공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다.

지역내 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현황부터 투자, 운영 관리계획까지 고려한다.

〈표 4-4〉 기성시가지의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계획

현황 분석	미래수요 전망	시설 계획	운영 계획	투자 계획
△ 시설현황 및 서비스수준 분석·평가 △ 신축·관리·운영 예산 추계 등	△ 인구구조 변화 분석 △ 수요추이 분석 △ 서비스 공급 목표 설정	△ 유형별 정비 계획 수립 - (기존)용도전환/동폐합/리모델링 - (신규)복합화 등	△ 시설별 운영계획 △ 시설 간 통합, 연계방안 △ 전달체계 등	△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 재원 확보계획

자료: 성은영 외(2022), p.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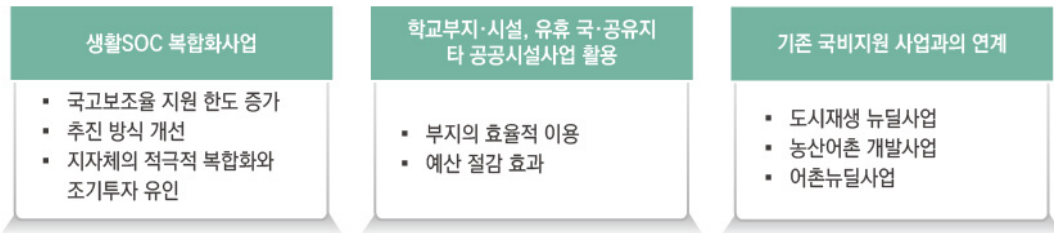
〈표 4-5〉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계획 항목 및 내용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수준 목표 설정	서비스 수준 현황, 이용 현황 및 향후 수요 전망
저이용·노후시설의 정비 및 신규시설 조성 방안	시설유형별 세부계획을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
신규 조성 시설의 적정 입지 및 규모	시설유형별 세부계획을 각종 사업계획에 반영
복합화사업 추진방안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복합화 검토

자료: 연구진 작성

□ 실행계획 : 예산 관련 기존 사업에 연계 추진 검토

□ (현황)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3개년계획의 종료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의 규모 축소로 인해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가 중요해짐



자료: 성은영 외(2021), 삶의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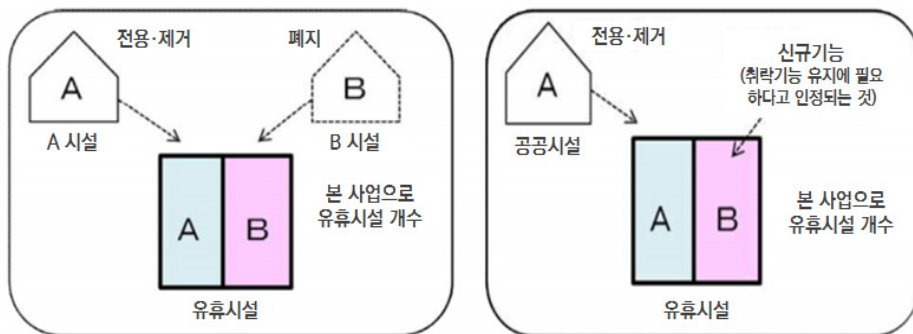
〈그림 4-6〉 종료된 생활SOC 관련 국비 사업

□ (개선) 자체 사업 추진시 예산 규모 및 지역 성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담 가능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며, 지속추진이 가능한 국비사업과 연계 적극 활용

① 면밀한 현황과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시설의 공급 및 기존 시설의 재배치 등 부담가능한 정책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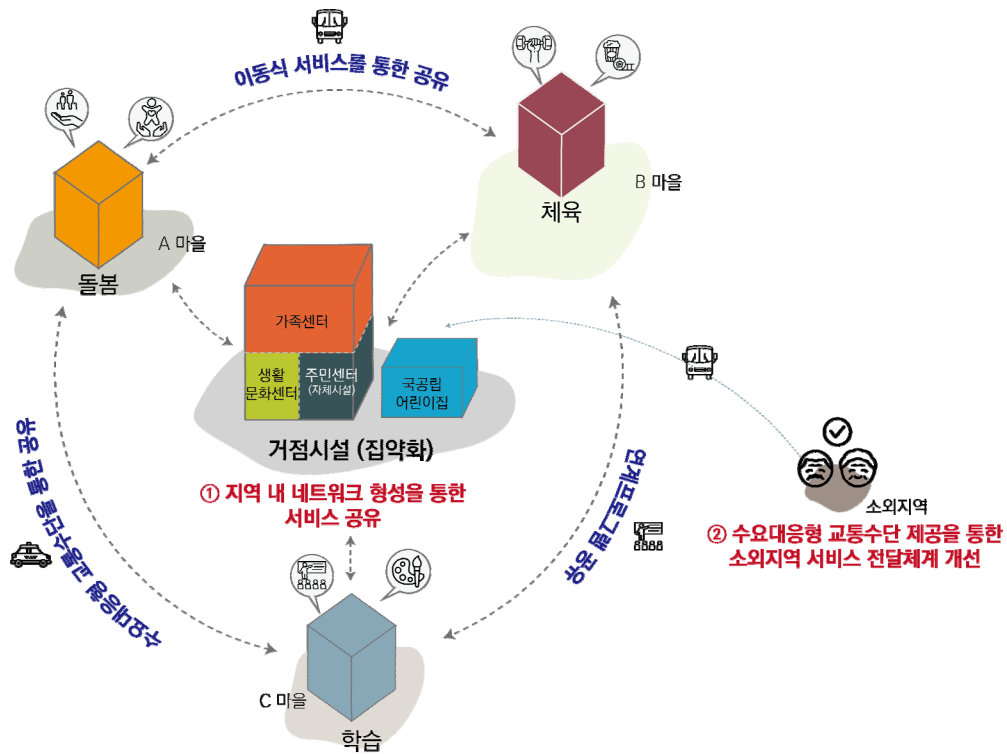
공간복지 시설의 공급 시 소요되는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은 시설의 규모 및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르지만, 각 지자체의 연간 예산 규모 대비 투입 가능한 범위를 설정한다.

고령자 복합시설에 포함된 시설 유형별로 기존 지역 내 시설 간 위계 및 기능 배분 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



자료: 조영재외(2018),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정책사례 및 주민의식조사 연구, 충남연구원, p.22의 그림 연구진 번역. 성은영 외(2022), p.280. 재인용

〈그림 4-7〉 시설의 재배치 및 재활용 개념



자료: 성은영 외(2022),p.282. 재인용.

〈그림 4-8〉 지역단위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체계 개념도

② 지속추진 가능한 국비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들과 연계 추진 방안 마련

각 부처의 개별 시설 사업 관련 국비 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확인하여 연계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행안부, 연간 1조원, ~2032년), 그린스마트뉴딜사업(교육부) 등 지속적인 대규모 국비사업 확인 및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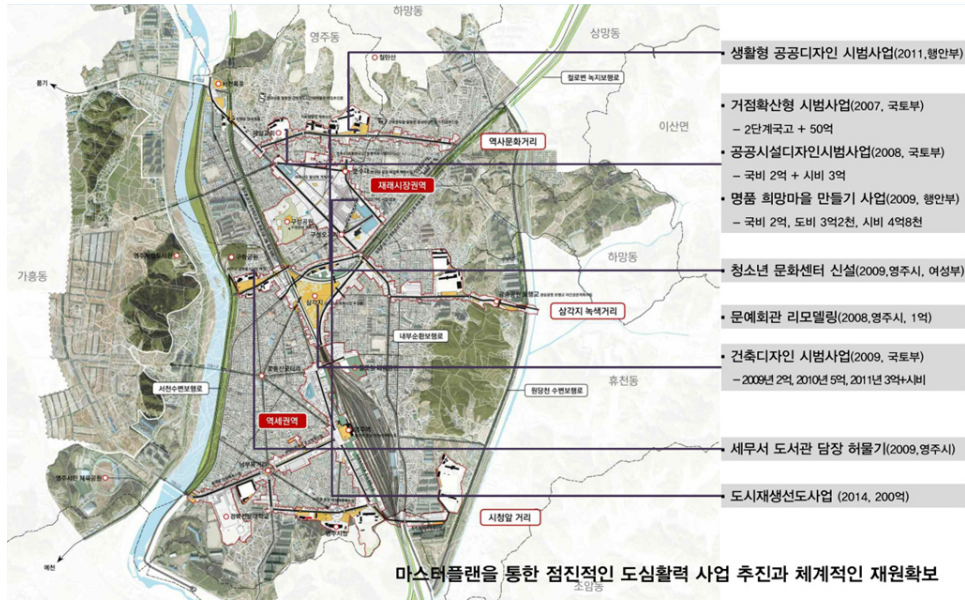
〈표 4-6〉 생활SOC복합화사업 대상 부처별 국비 사업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율(정액 또는 정률)	
				단일	복합
문체부	균등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①일반 40% ②농어촌 80% (최대 16억원 한도)	①일반 50% (최대 50억원 한도) ②농어촌 90% (최대 18억원 한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①일반 70% (최대 98백만원 한도)	①일반 80% (최대 112백만원 한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0%	50% (최대 9억원 한도)
	체육기금	국민체육 센터건립 지원	생활권형	30억원	40억원
			장애인형	①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증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40억원	①체육관·종목특화형 40억원(수증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5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0억원	12억원
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0% (최대 899백만원 한도)	60% (최대 1,079백만원 한도)
	일반회계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센터구축	[리모델링비] ①서울 30%(15백만원) ②지방 50%(25백만원) [기자재비] 100%(20백만원)	[리모델링비] ①서울 40%(20백만원) ②지방 60%(30백만원) [기자재비] 100%(20백만원)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확충	서울 50%, 지방 80%	- (좌동)
	건강기금	건강생활 지원센터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6.7% (최대 10억원 한도)	75% (최대 11.5억원 한도)
	농특회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여가부	양명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축비 없음(단, 복합화로는 인정)	
	균등회계 (지역지원)	가족센터(복합)	가족센터 신축	지원불가	복합시설만 50% (최대 기본형 10억원, 확장형 15억원)
국토부	균등회계 (지역자율)	주차환경개선	주거지주차장	50%	60%
중기부	소진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공시설 주차장 이중 보조	60%(한도없음)	- (좌동)
농식품부	일반회계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신지원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지원)	20% (최대 6억원)	- (좌동)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p.6.

[사례] : 영주시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 수립 사례]

영주시의 경우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후 10여년 간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림 52] 영주시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

RESULT“영주를 공공건축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20개 사업 860억 예산 확보”

- 2008 국토해양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 : 사업비 6억 도시건축박물관
- 2009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최우수상 : 사업비 2억
- 2010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속사업 선정 : 사업비 139억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 2011 행정안전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 사업비 10억 거위의 꿈
- 2012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지원사업 최우수상 : 사업비 20억 U-기술적용을 통한 도심재생
- 2012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 사업비 7억 후덕한 삶을 위한 공간환경 개선사업
-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 사업비 40억 주치골
- 2013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 사업비 5억 문수산사무소 그린리모델링
- 2013 농림축산부 지역활의사업 2개 선정 : 사업비 40억 무쇠달마을 경관개선사업 및 청소년문화활동공간 조성
- 20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사업 선정 : 사업비 200억 역전을 역전하자
- 2014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개 선정 : 사업비 25억 금계권역 및 사그래이마을
-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사업비 60억 골작골지구
- 2015 국토교통부 야심만만 영주정터 조성사업 : 사업비 46억
- 2015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시범사업 : 사업비 10.2억 학사골목
- 201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사업비 80억 풍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2016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 사업비 9.78억 학사골목 청년창업인큐베이팅
- 2016 국토교통부 새마을사업 : 사업비 60억 관사읍 새마을사업
- 2017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 사업비 43억 광복로 장소가치향상사업
- 2018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 사업비 47억 구 도립도서관 공유유희점 조성

3.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

- 기성시가지 정비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공급-공간활용-네트워크(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관점에서 융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시설공급 및 공간조성은 국토부 사업이 많으며, 서비스는 복지부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융복합·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입지와 규모, 융복합 방법 등을 수요와 고객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생활SOC 정책추진과정에서도 명확한 수요와 요구분석 없이 추진된 것이 현실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체계적 시설공급과 서비스전달,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또한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침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 유형, 공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생활SOC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의 관점에서 재정리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도시시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시대와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립하는 것도 요구된다.

- 또한 본격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고령자 복지시설의 모델 개발,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기획·운영 방안 마련, 운영효율화 방안 등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고령자 복합시설의 모델 개발 : 지역단위 추진 가능한 고령자 복합시설의 다양한 모델 개발을 개발하여 시범 공급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유형의 설정 및 사업화를 도모한다.

주민참여를 통한 기획·운영 방안 마련 :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의 공급 및 지속가능한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설 공급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하므로 증가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생활SOC의 지속가능 운영효율화 사례 (성은영 외(2021), 생활SOC 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 발전 방안 연구, pp.310~313)

(운영자 주도형 공공시설 사례) 노들섬, 先 운영계획·운영자 선정, 後 시설조성(김정빈, 2020)²⁴⁾

- 노들섬은 2000년대 들어 이명박 시장의 오페라 하우스, 오세훈 시장의 한강예술섬 프로젝트 등에 약 275억 원을 매몰시키며 실패한 프로젝트로 잊혀진 장소였으나 2015년 ‘노들섬’ 공모전을 통해 전환
- 노들섬 공모전은 시설을 위한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운영 중심의 3차 공모(①운영구상 공모, ②운영계획·시설구상 공모, ③공간·시설 조성 공모)로 구성²⁵⁾
- 그러나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운영자 팀과의 계약은 추진되지 못했고²⁶⁾ 2018년 3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민간위탁 입찰’을 통해 노들섬 공모전 시작 이후 만 3년만인 2018년 6월, 어반트랜스포머팀과 정식 계약 체결
- 2019년 9월, 어반트랜스포머팀이 운영하는 노들섬이 새로 개장하며, 현재 대규모 공연장 및 뮤직라운지와 민간 F&B 브랜드 및 아틀리에, 가드닝 클럽 등이 입주
- 이 외 운영사인 어반트랜스포머의 사무실과 운영자가 직영하는 카페와 독립서가가 조성되어 있으나 직영공간의 사용수익 허가 등 공공시설에 수익 재투자 절차 복잡



자료 : 어반트랜스포머 홈페이지. <https://urban-transformer.com> (검색일 : 2021.11.30.)

(좌) 노들섬 노들서가, (우) 노들섬 전경

(운영자 양성형 공공시설 사례) 무중력지대, 서울시 최초의 청년중심 공간

- 서울시 청년청은 ‘청년들의 놀자리’ 공급 차원에서 여가, 취·창업 및 자기계발 공간이 부족한 청년세대를 위한 열린 공간 조성 사업으로 무중력지대 조성
- 구로구 가산동의 무중력지대 G밸리를 시작으로 현재 9개의 무중력지대가 자치구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지자체 중점 사업 및 입지와 인구 현황에 따라 센터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²⁷⁾

- 2015년 1·2호점(무중력시대 G밸리, 대방동)은 운영주체가 운영계획과 함께 내부 공간을 설계²⁸⁾했으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중력시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간적 특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후 7개 센터는 조성이 완료된 공간에 운영주체 입주



자료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검색일 : 2021.11.30.)

(좌) 무중력시대 강남, (우) 무중력시대 대방 코워킹 및 강의공간

- 무중력시대의 위탁운영 주체와의 계약은 최대 3년으로 이후 교체되나, 무중력시대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성적 자산(청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양한 결과물 등)을 축적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정 규모 이상 성장 시, 법인을 분리해 민간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운영주체의 성장 기반 마련²⁹⁾

(민관협력형 공공시설 사례) 플랫폼창동 61,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협력 운영

- 플랫폼창동 61은 SH가 서울시의 창동·상계 도시재생 대생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동북권역에 문화·경제산업단지의 마중물사업으로 추진된 복합 문화공간(교육, 전시, 공연 등)
- 운영주체인 (주)인터파크는 플랫폼창동 61의 운영을 계기로 향후 '동북권역 문화예술 산업단지 사업' 참여를 목표로 공연 공간과 뮤지션들의 입주공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 판매공간 등 운영
- 플랫폼창동 61은 SH가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일반적인 공공시설이 공유재산 물품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규제가 없고, 정부 및 지자체와 달리 사업 근거나 선례 없이도 새로운 시도에 도전할 수 있는 행정적 유연함이 공사와 협업으로 발현된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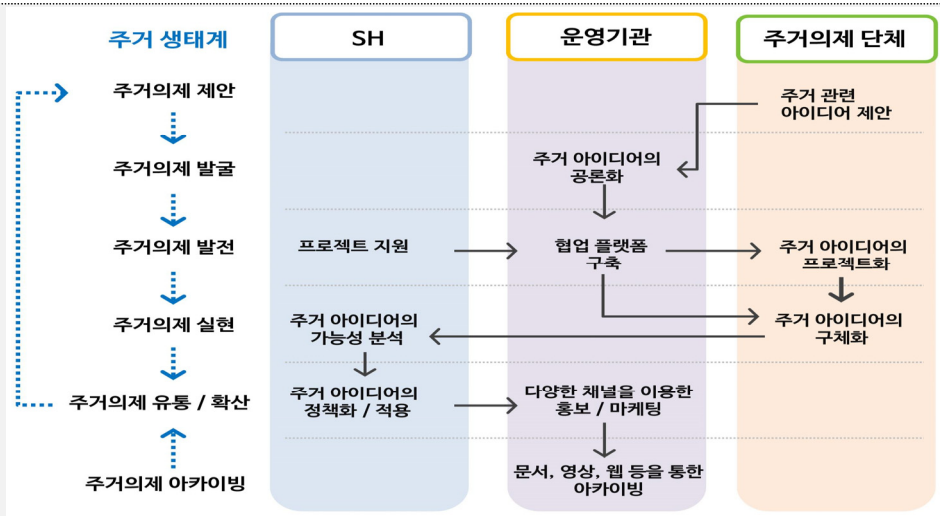
자료 : “플랫폼창동 61_every day 창동”,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320019&memberNo=29931758> (검색일 : 2021.11.30.)

(좌) 플랫폼창동 61 축제, (우) 플랫폼창동 61 시설 현황

(민관자립형 공공시설 사례) 서울하우징랩, 민간책임 공간운영 시도

- 서울하우징랩은 당산 SH빌 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자 2015년부터 활용방향을 모색해 2018년 주거의제 거점공간으로 조성
- SH와 주거의제 거점공간을 함께 기획한 서울시 NPO 지원센터는 당산동 생활권 수련시설이 주거이슈를 기반으로 민간, 공공, 주민 간 수평적 논의공간으로 활용되고, 민간단체와의 유연한 협업을 위해 공간운영 전문단체의 필요 제기
- SH는 사회적 기업 로모(ROMOR)에 주거의제 거점공간인 서울하우징랩 운영을 용역 계약 방식으로 위탁해 현재는 로모가 서울하우징랩의 공간 활성화와 주거의제 거점사업 추진 중
- 주거의제 거점공간은 주거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창구이자 실험공간으로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유공간 모델로 이를 위해 다양한 입주 단체와 협업 및 통합관리가 가능한 민간위탁(책임운영) 방식 제안
- 공간의 지속 운영을 위해 SH가 사업초기에는 운영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일정기간(3년) 이후에는 예산지원 규모를 줄이고 운영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책임 공간 운영’을 최종 목적으로 운영모델 제안



자료 : 프로젝트 노아(2017), 당산 주거 플랫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p.35.
 〈서울하우징랩을 통한 주거 생태계 조성〉

- 당산 주거 플랫폼의 '민간책임 공간운영 모델'이 제안됨에 따라 사업초기에는 SH가 운영예산을 지원하지만, 일정기간(3년) 이후에는 예산지원 규모를 줄이고 운영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 검토

* 공기업이 공공디벨로퍼로서 공간조성부터 운영까지 공공-민간의 플랫폼 역할 수행(김승주, 2020)

- 서울하우징랩은 주거복지 플랫폼이 구축되는 거점공간으로 플랫폼 구축을 위해 SH, 운영주체, 주거의제 단체 간의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울하우징랩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 기존 주거의제 그룹 외에도 주거 공동체,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 등 참여주체 확대 방안 모색 중
- 또한 민간책임 운영 3년 이후, 수익을 기반으로 민간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운영모델은 사업초기 예산 및 경험 부족으로 정착이 어려운 신생기업에게 새로운 시도를 독려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이후의 수익창출 모델을 기획하는 데 공사가 협력하는 새로운 민간협력 모델 가능성 제기
- 2017년 12월 설립된 로모는 서울하우징랩의 운영을 통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기획 및 공간의 유지·관리, 사업모델 안정화를 위한 수익모델 창출과 주거의제 플랫폼 기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 등 공사의 예산지원 없이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며, 서울하우징랩과 함께 성장
- 공사는 주거 및 공간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간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민간주체의 활동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플랫폼 역할 확대

(시민자산화 공공시설 사례) 바이아이, 시흥 월곳의 시민자산화 시설

- 민간의 공공시설 운영 및 조성에 참여가 확대되며 공공시설의 소유권, 사용권, 운영관리권 전체를 민간(지역 사회 또는 사회적 기업)에 양도하는 시민자산화, 지역자산화 논의

-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했으며 (한승욱, 2016),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자산화 시도(오은주, 2019)
- 시흥 월곶의 바오스앤밥스, 바이아이 등을 조성한 (주)빌드는 지역 내 생산자와 구매자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되가져가는 금융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상업공간의 커뮤니티 운영모델 구축
-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조성된 바오스앤밥스를 빌드에서 분사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월곶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주주와 임직원 보유 주식은 30%에서 5년 후 60%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자산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식 추진 중
- 빌드는 ‘바오스앤밥스’ 이후, 꽃집 겸 베이커리, 카페인 ‘월곶동책한송이’와 장난감 없는 키즈카페 ‘바이아이’, 콜라푸드 직거래 매장이자 공유주방인 ‘월곶식탁’ 등을 개업하고, 매장 운영 외에도 매장을 기반으로 월곶동 아이 엄마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해 빌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금액 지원
- 바이아이는 시흥시와 시민자산화 업무협약을 맺고 시가 공간을 매입해 빌드가 시세의 반값에 빌리는 형태로 일정기간 경과 후 빌드와 시민주주가 공간을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



자료 : 월곶동 책한송이 facebook.
<https://www.facebook.com/wolgotbookflowercafe/>
 (검색일 : 2021.11.30.)

월곶동 책한송이



자료 : <https://notefolio.net/Hurray/129370>
 (검색일 : 2021.11.30.)
 바이아이

- 24) 김정빈(2020), “다가을 장소들에게 남겨진 것”, 『SPACE』 Vol.627. (https://vmo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OTew (검색일 : 2021.11.30.))
- 25) 1차 공모전은 노들섬 운영 등에 대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창의적인 운영기획안을 제안하도록 해 1차 공모 당선자에게 운영계획 및 시설구상에 대한 2차 공모 참가자격이 부여됨. 1차 공모 당선자 10팀 중 하나였던 어반트랜스포머팀은 7팀과 협업해 ‘밴드오브노들’ 컨소시엄으로 2차 공모전에서 당선되며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음. 3차 공간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에는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시설의 규모 및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노들마을’을 제안한 MMK+ 작품이 당선되었음.
- 26)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공모전 당선자에게 운영권을 위탁한 전례가 없었고,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공모전 당선자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음.
- 27) 무중력지대 홈페이지(<http://youthzone.kr/>)
- 28) 프로젝트 노아(현 (주)앤스페이스 정수현 대표 인터뷰 글(<https://brunch.co.kr/@jacong/63>))
- 29) 사범사업의 운영주체였던 프로젝트 노아는 현재 앤스페이스, 로모, 사회작업업 안테나 등의 기업으로 성장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 본 연구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관점의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기성시가지 정비(재생) 과정에서 고령친화적 시설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짐
- 이를 위해 고령자의 현황과 특징 등에 대한 통계분석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고령친화전략을 도시 내에서의 2개 공간특성 즉, 신개발과 기성시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
- 신도시(신시가지)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전략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발’과 ‘충남형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 방안을 고려함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될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일률적이며, 전통적인 토지이용 및 시설공급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또한 기성시가지에서 고령친화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기성시가지 정비과정에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생활SOC 복합화 전략은 물론 입법 중인 ‘공간복지’ 개념을 받아들여 충남만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 고령친화적 안전거리 조성사업(Safe Streets for Seniors Program)를 충남의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미국의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연계형 고령친화 주거단지 조성 사업)등을 참조하여 천안과 아산, 홍성 등 대학이 있는 시군은 대학·민간 중심의 대학 캠퍼스 내 신규 주거단지 개발 형식으로 조성도 가능할 것임. 특히 대학의 유희부동산 개발과 연계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정비·보완도 요구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거나, 고령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세대융합·세대통합의 관점에서 기존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칭)충청남도 세대통합사회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충청남도 만들기를 견인·지원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융합적 도시조성이 되도록 유도함. 예를 들어 점점 발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오사카부에 있는 ‘스이타 스마트 타운’은 지역의 15개 기업과 단계가 연계하여 건강을 테마로 한 세대통합형 스마트타운을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주)파나소닉이 15개 기업과 연계한 세대통합형 건강주거 단지로, 단지 내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활의 편리성·쾌적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거주자를 위한 주택 361호를 공급한다.

주택 361호는 가족형 주택 100호(8층), 분양을 위한 주택 73호(6층), 1인가구와 독신자를 위한 주택 73호(6층)으로 구성하고, 이들 주택은 웰빙복합시설, 복합상업시설, 교류공원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타운 내 공동체 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조성되어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대융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과 시설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시티 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며, 그 밑바탕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정책건의

- 도시개발사업 수립지침에 있어, 정책이슈 변화와 관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지침의 종합적 검토와 선택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국토부 도시개발지침에 고령친화 관점에서 지침을 보완 수정하여, 실제 적용과정에 활용한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초점을 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적용이다.

세 번째는 민선8기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세대통합(리버투게더) 관점의 주택공급 및 주거지 개발을 위한 ‘충청남도 세대통합 맞춤형 도시 가이드라인’으로의 업그레이드 및 적용이 요구된다.

- 실제 고령친화적 도시조성 관점이나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융합하는 도시조성 관점은 큰 흐름에서는 동질성이 많다.

- 한편, 도시재생(정비) 관점에서의 고령자를 포함한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을 위한 융복합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부족한 지방재원을 감안하고, 국민의 기초적이고 효과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하지만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생활SOC정책과 공간복지 관련 법제정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SOC 및 서비스 공급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시설 이용자(고객)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기초한 세밀한 분석연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시설의 입지나 이용실태 파악에 있어 단순한 주거(상주)인구 뿐만 아니라 활동인구(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관점에서 시설의 융복합적 공급 및 이용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충남 고령친화도시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통합 관점으로 확대됨. 그에 따라 세대통합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이와 관련된 추가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참 고 자 료

- 경제조사회, 2005,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비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20), 생활SOC공간분석도구 사용자매뉴얼,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21), '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 국토교통부, 2022,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2021, 인구감소시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공간모델 구축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촌형교통모델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서울복지재단, 2010
- 충남연구원, 2015,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충남정책지도)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의 미래 2040
- 충남연구원, 2015,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정책지도
- 충남연구원 외, 2019,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충청남도,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시행계획
- 고영호·허재석·임진영(2021),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 로드맵 수립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고영호·허재석, 2012,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BRCs) 모델 연구, 교육부.
- 김경우, 2011,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지 Vol.2 No.1, pp.107-130.
- 김경태, 2004, 고령사회에 있어서 생활환경의 변화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역할,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6호 Vol.17 No.2, pp.231-240.
- 김미희·김석경, 2015, 대학연계형 은퇴주거단지의 계획 및 운영상의 특성분석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6 No.4, pp.119-127.
- 성은영·강현미·고영호·민혜경, 2021. 생활SOC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 발전 방안. 국무조정실.

성은영·강현미·김성준·오성훈·허재석·정혜윤·황남희·김경래·임덕영·남궁은하·정희선,
 202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은영·강현미·허재석,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성은영·조시은·한수경·공지희·김수빈·심재현·정문수·김태완·민경찬·손경민·임준홍·원광희,
 2022, 도농복합도시의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은영·강현미·고영호·송경민, 2019,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2013, 노후주거지에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들은 얼마나 가까이에 있을까,
 건축과도시공간, Vol.14, p.43
 오성훈·유광흠·성은영·강현미·한수경, 2020,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임준홍, 2015, 충남의 주거환경 격차분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충남연구원
 임준홍·오용준 외, 2017,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충남연구원
 임준홍·최정현, 2019,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임준홍·최정현, 202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수요분석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급
 모델 제안,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2020,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순돌·박현주·김보경, 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4, pp.203-224.
 정경희, 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Vol.1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2-112.
 정은하,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평가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조영재, 2019,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 및 정책방향
 国土交通省, 2014.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2014
 新潟市, 令和2年3月, 新潟市公共施設の種類ごとの配置方針
 NIRA総合研究開発機構, 2008, 地方再生へのシナリオ
 瀬田史彦, 2016, 公共施設再編のその先, 計画行政, 39 (2) , pp.33-38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2014
 国土交通省, 2014. 健康・医療・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ガイドライン, 2014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11, Age-friendly in Practice, Age-friendly World.
- WHO, 2018, About 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Towards Lifetime Neighbourhoods: Designing Sustainable Communities for All - A Discussion Paper.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 A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in an Ageing Society.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Lifetime Neighbourhoods.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Orr, D. & Joseph, G., 2013, Barking Riverside. London: Habinteg Housing Association.
- Greater London Authority, 2016, Barking Riverside: In the London Borough of Barking and Dagenham. London: Greater London Authority.
- Mayor of London, 2015, London Riverside: Opportunity Area Planning Framework. London: Mayor of London.
- Sophie Watson, 2020, Spatial Justice in the City
- Graham Currie, Melbourne DRT Trial Program Development Operator Workshop, Monash University
- National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Council, 2016, Healthy Aging in Action: Advancing the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 Daatland, S.O., 2005, Quality of life and ageing.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age and age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71-377.

- Forsyth, A. & Molinsky, J., 2020, What is Aging in Place?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USA: Housing Policy Debate.
- UNFPA, 2012,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elebration and A Challenge, New York: United National Population Fund(UNFPA).
- Casey, B., et al., 2003,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Recent Measures and Areas for Further Refor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369, OECD Publishing, Paris.
-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2017, Age-Friendly NYC: New Commitments for a City for All Ages. New York: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 Hunt, M. E., & Gunter-Hunt, G., 1986,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3 No.3-4, pp.70-75.
- Paying for Senior Care, 2019, New York's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 Greenfield, E. A., et al., 2013, A Tale of Two Community Initiatives for Promoting Aging in Plac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NORC Programs and Villages, The Gerontologist, Vol.53 No.6, pp.928-938.
- Maclaren, C., et al., 2007, History, Accomplishments, Issues and Prospects of Supportive Service Programs in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in New York Stat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49 No.1-2, pp.127-144.
- Bronstein, L., & Kenaley, B., 2010, Learning from Vertical NORC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Horizontal NORC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Vol.24 No.3-4, pp.237-248.
- Parker, T., 2020, What Is a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 FineLaw Staff, 2021, New York Consolidated Laws, Elder Law - ELD § 209.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supportive service program.

Zarem, J. E., 2010, Today's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CCRC Task Force, American Seniors Housing Association.

Shippee, T. P., 2009, "But I Am Not Moving": Residents' Perspectives on Transitions Within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The Gerontologist, Vol.49 No.3, pp.418-427.

Stanley, M., 2021,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s).

Yoo, S., 1996,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Yonsei University, Seoul.

Knight Frank's Retirement Housing, 2016, Seniors Housing.

Stevenson, S., 2014, List of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Senior Living Trends, September 03.

Skular, J. A., & Jacobson, J., 2007, UMD University for seniors residential community phase 1: Overview of possible models for UMD. University of Missouri- Duluth Labovitz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관계부처 합동, 2018a, 내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8b),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9b),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1.9.12., "뉴욕타임즈가 신의선물이라 극찬한 100원 택시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8.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11.20., "충청남도 복지수도 뒷받침 '충남복지재단' 닷 올리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11.2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남복지재단이 믿는다"

통계청, 2021, 2021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시도(2017-2030)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2021.5.31., "충남 내년부터 단계별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비 무료"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d.,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safeseniors.shtml>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3%A0%EB%A0%B9%EC%B9%9C%ED%99%94%EB%8F%84%EC%8B%9C>,
 캉캉모리 홈페이지(<https://www.collectivehouse.co.jp/kankanmori/life.html#commonsplace>(2022.02))
 WHO 홈페이지(<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
 WHO Age-friendly World, 2022,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홈페이지(Welcome to Age-friendly World - Age-Friendly World (who.int))
 Harvard University, 2021, <https://www.jchs.harvard.edu/blog/naturally-occurring-retirement-communities-score-lower-livability>
 Queens Community House, 2022, <https://www.qchnyc.org/programs/older-adult-services/forest-hills-norc>
https://afc.welfare.seoul.kr/afc/frontViewForm.do?seq=39&sys_id=BBS
 Wikipedia site:djanimateurfinistere.com
 구글 (Aging-Friendly City Design) 검색
 新潟市財産経営推進計画(https://www.city.nishitokyo.lg.jp/smph/siseizyoho/sesaku_keikaku/kokyo_tekisei/708904nishitokyocity20210216ws.html)
<https://www.lnews.jp/2021/03/n0331309.html>
<https://thinkit.co.jp/article/12916>
<https://www.autoweek.com/news/technology/a35082890/nuro-gets-first-commercial-autonomous-vehicle-permit-in-california/>
<https://www.cnet.com/roadshow/news/honda-gm-cruise-self-driving-car-test-japan/>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 집 필 자 ■

연구책임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정현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22-09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글쓴이 · 임준홍 · 김용현 · 최정현 · 이왕건 · 성은영 · 고영호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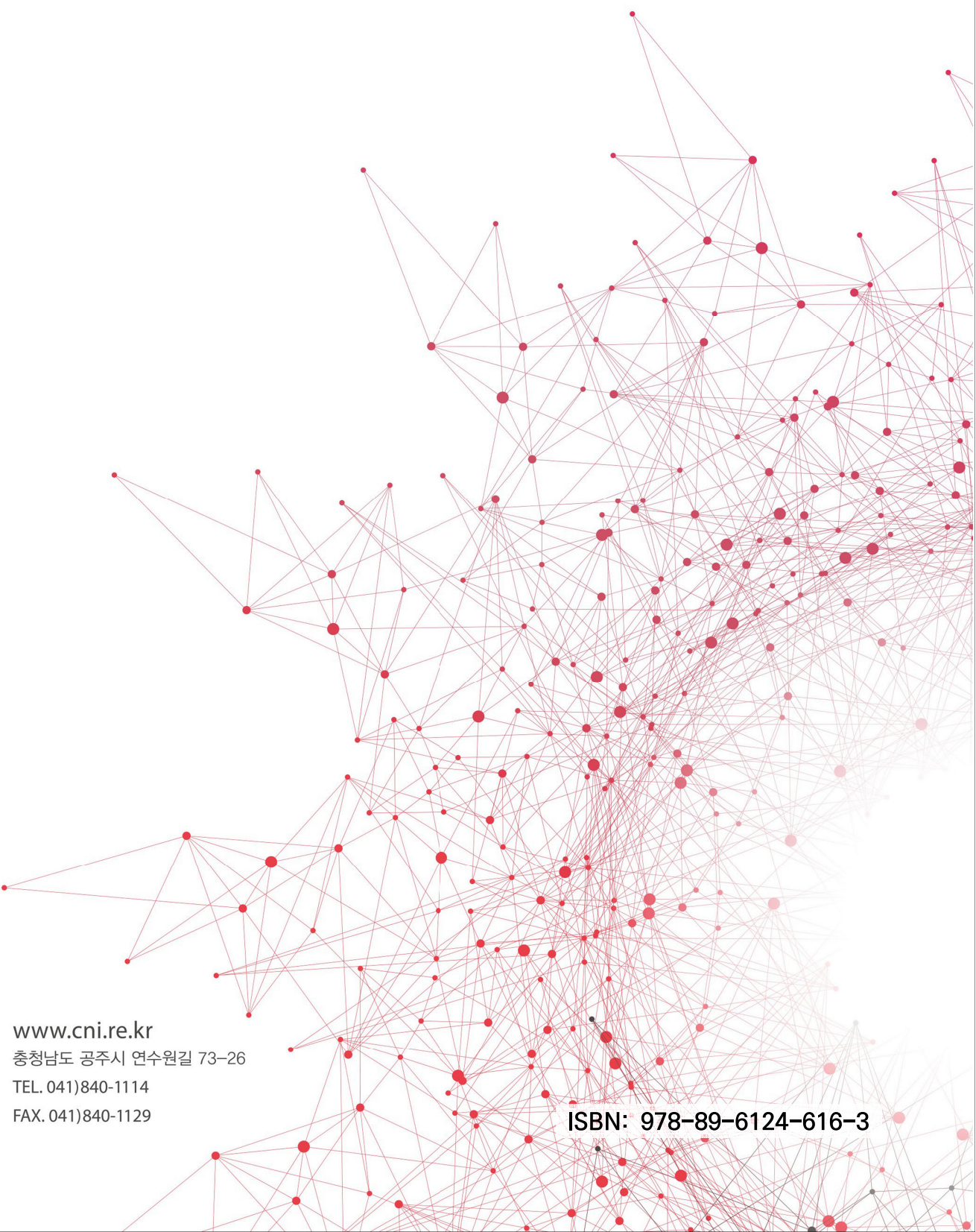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16-3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16-3